NABO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2017 조세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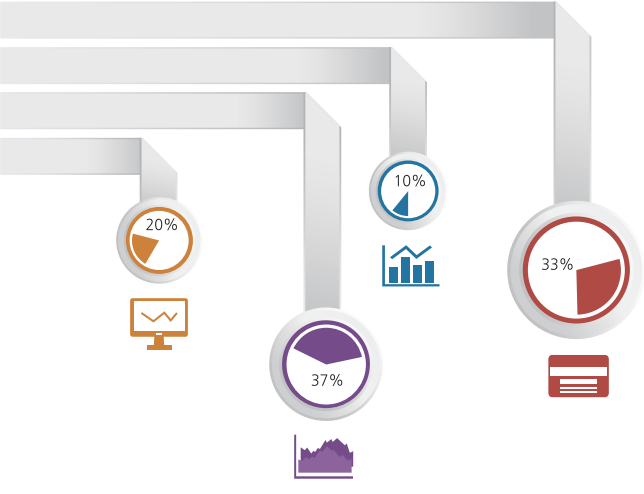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차 례 |

Part 01 조세개요

1. 국세 조세체계 및 변천
2. 지방세 조세체계 및 변천
3. 조세 분류
4. 재정조정제도
5. 국세수입
6. 지방세수입
7. 총조세, 지방세 비중
8. 조세부담률
9.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10. 국제비교: 조세구조
11. 국제비교: 지방세 비중

Part 02 국세

12. 조세정책 주요 흐름(2008년 이후)
13. 국제비교: 주요 세율 추이

■ 소득세

14. 소득세 과세체계
15. 소득세 세율
16.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17. 소득세수 현황

18. 소득세 과세 현황
19.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20.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
21.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
22.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
23.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

법인세

24. 법인세 과세체계
25. 법인세 과세대상
26. 법인세 최저한세
27.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28. 법인세수 현황
29. 법인수 추이
30. 법인세 과세 현황
31. 법인세 과세 현황: 기업규모별
32. 법인세 과세 현황: 과표구간별
33.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34.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35. 법인세 미부담 기업
36.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37.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38.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39.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부가가치세

40.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41. 영세율, 면세

42. 부가가치세수 현황
43. 국제비교: 부가치세 세율구조
44.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
45. 국제비교: 면세 대상
46. 국제비교: 경감세율
47. 국제비교: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48.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49.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 상속·증여세

50. 상속세 과세체계 및 공제
51. 증여세 과세체계 및 공제
52. 상속·증여세수 현황
53. 상속·증여세 평균 실효세율
54. 국제비교: 상속·증여세제
55. 국제비교: 상속·증여세 부담
56. 상속·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 기타 세목

57. 종합부동산세
58. 개별소비세
59. 주세
60. 인지세
61. 증권거래세
62. 교통·에너지·환경세
63. 교육세
64. 농어촌특별세
65. 관세

Part 03 조세특례

■ 운영 현황

66. 전체 현황
67. 세목별 조세특례
68. 예산분류별 조세특례
69. 조세특례평가제도
70. 조세지출 관리규정

■ 일몰도래 조세특례

71. 2017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Part 04 지방세

■ 지방세 세목

72.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73. 취득세
74. 지방소득세
75. 재산세
76. 자동차세
77. 지방소비세
78. 지방교육세
79. 담배소비세
80. 등록면허세
81. 주민세
82. 지역자원시설세
83. 레저세

84. 시도별·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85. 주요국의 특징적인 지방세 세목

지방세 조세감면

86.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87.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88.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89.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

Part 01

조세개요

01 국세 조세체계 및 변천

■ 총 14개 세목: 세목별로 해당 조세법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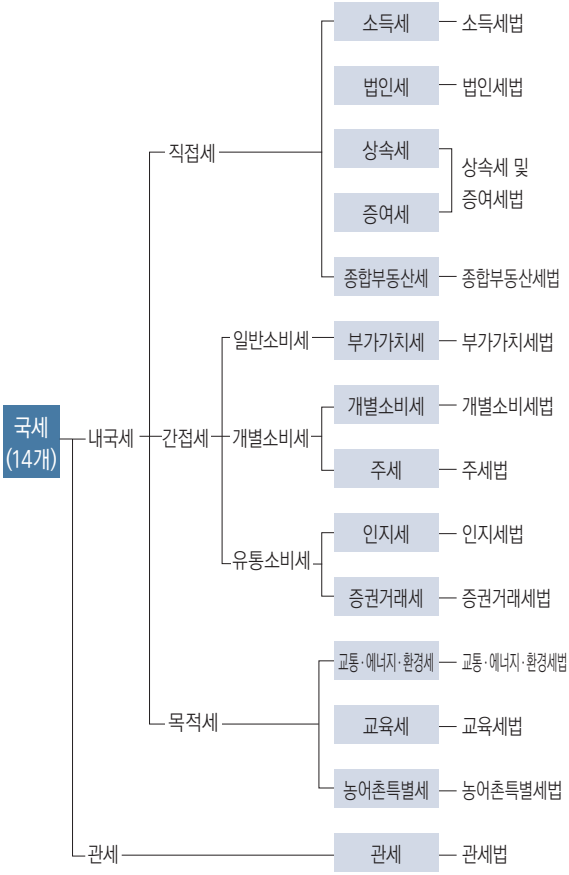

국세 세목 변천

	'70	'78	'79	'82	'91	'94	'99	'01	'02	'03	'04	'05	'08 이후
자산재 평가세	'49→	→	→	→	→		→	폐지					
부당 이득세	'49→	→	→	→	→		→	→	→	→	→	→	폐지
토지초과 이득세	'49→	→	→	→	→		폐지						
증권 거래세			도입	→	→		→	→	→	→	→	→	→
전화세	'74→	→	→	→	→	→	→	→	부가가치세에 통합				
물품세	'49→	폐지											
통행세	'49→	폐지											
입장세	'49→	폐지											
전기 가스세	'49→	폐지											
영업세	'49→	폐지											
석유 류세	'49→	폐지											
방위세	'75→	→	→	→	폐지								
교육세				도입	→	→	→	→	→	→	→	→	→
교통세						도입	→	→	→	→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변경		
농어촌 특별세						도입	→	→	→	→	→	→	→
종합 부동산세						도입	→	→	→	→	→	→	→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02 지방세 조세체계 및 변천

■ 총 11개 세목: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등 4개 법에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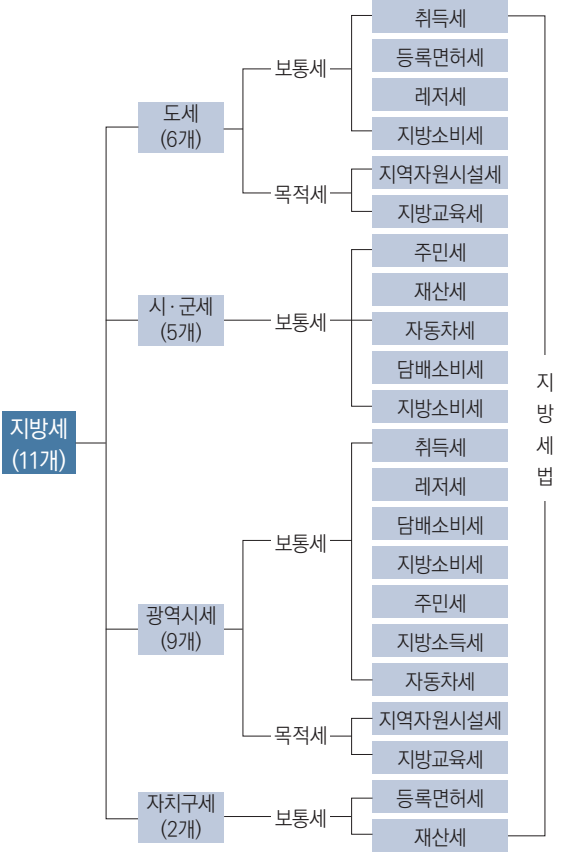

지방세제 변천

'91	• 공동시설세 전환(시·군세 → 도세), '지역개발세' 신설
'99	• '주행세' 신설 * 자동차세율 인하 후 세수 보전
'01	• 세목 변경 및 전환: 경주·마권세 → '레저세' 지방세 부가 교육세 → '교육세' 전환
'05	• 보유세 합리화: 토지, 건물 통합평가, 원가 → 시가 * 종합토지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등록세율 인하: 3% → 2% *보유세 부담 증가 상쇄
'10	• '지방소비세' 도입: 부가가치세액의 5% • '지방소득세' 신설: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통합 • 지방세법 분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1	• 지방세 세목 개편: 16개 세목 → 11개 세목(현행) * 농업소득세, 도축세 폐지 및 세목 통합 ※ 등록면허세: 등록세의 등기·등록, 면허세의 인·허가 등 지역자원시설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주행세 취득세: 등록세 중 취득 관련 과세대상 재산세: 도시계획세 통합
'13	• 지방소비세 세원 확대: 부가가치세액의 11%(+6%p) • 취득세율 주택분 인하: 9억원 2%/4% → 6억원/9억원, 1%/2%/3%
'14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소득세액, 법인세액의 10% → 개인·법인소득을 과표로 지방세법상 세율 적용 • 등록면허세 인상
'15	• 담배소비세 인상(예: 궐련 20개비 641원 → 1,007원 등)
'17	• 지방세법 4법 체계화: 지방세징수법 추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03 조세 분류

■ 세원별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타과세로 구분

세원		국세 (14개 세목)	지방세 (11개 세목)
소득 과세		• 소득세 • 법인세 •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 지방소득세
소비 과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감면분) • 관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자동차세(주행분)
재산 과세	보유 과세	• 상속·증여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분)	• 재산세 •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 • 자동차세(보유분)
	거래 과세		• 취득세
기타 과세		• 교육세	• 주민세 •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세 (자원) • 지방교육세

04 재정조정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조정: 교부금, 국고보조금

- 교부금은 의무지출 항목으로 지방이전재원에 해당, 지자체별 재원부족액(기준재정소요액-기준재정수입액) 기준으로 배분

▶ 지방교부세율: ('95년) 13.27% → ('06년 이후)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율: ('95년) 11.80% → ('06년 이후) 20.27%

■ 지방재정조정

	지방이전재원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근거 법률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법률 등
목적	지자체재원보장 재정불균형완화	교육의 균형발전	특정사업 지원
재원	• 보통·특별교부세 : 내국세[1]의 19.24%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총액 • 소방안전교부세 :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 내국세의 20.27% • 교육세 중 일부[2]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예산으로 계상

주: 1) '지방이전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 교육세와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제외분
2) 2016년까지 교육세의 전액이 지원되었으나, 2017~2019년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교부금"에 일부 지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재정 2017」

05 국세수입

■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세수 호조('16년 242.6조원)

- (+)요인: 취업자수 및 상여금 증가, 부동산경기 호조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효과
  법인실적 개선, 수입증가 및 교역량 증가
- (-)요인: 수출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세	161.5 [17.0]	167.3 [3.6]	164.5 [-1.7]	177.7 [8.0]	192.4 [8.3]	203.0 [5.5]
소득세	38.9	36.4	34.4	37.5	42.3	45.8
법인세	35.4	39.2	35.3	37.3	44.9	45.9
상속·증여세	2.8	2.8	2.4	3.1	3.3	4.0
종합부동산세	2.4	2.1	1.2	1.0	1.1	1.1
부가가치세	40.9	43.8	47.0	49.1	51.9	55.7
개별소비세	5.2	4.5	3.6	5.1	5.5	5.3
주 세	2.3	2.8	2.8	2.9	2.5	3.0
교통·에너지·환경세	11.5	11.9	10.1	14.0	11.5	13.8
관 세	7.4	8.8	9.2	10.7	11.0	9.8
기 타	14.7	15.1	18.6	17.2	18.3	18.5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 )는 전체 국세대비 비중값임
2) 2007~2016년은 실적치, 2017년은 추경예산, 2018년은 예산안 기준

(단위: 조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추경예산	2018 예산안
201.9 [-0.5]	205.5 [1.8]	217.9 [6.0]	242.6 [11.3]	(100.0)	251.1	268.2
47.8	53.3	60.7	68.5	(28.2)	69.6	73.0
43.9	42.7	45.0	52.1	(21.5)	57.3	63.1
4.3	4.6	5.0	5.4	(2.2)	6.0	6.2
1.2	1.3	1.4	1.3	(0.5)	1.4	1.8
56.0	57.1	54.2	61.8	(25.5)	62.6	67.3
5.5	5.6	8.0	8.9	(3.7)	9.0	10.1
2.9	2.9	3.2	3.2	(1.3)	3.3	3.5
13.2	13.4	14.1	15.3	(6.3)	15.4	16.4
10.6	8.7	8.5	8.0	(3.3)	9.0	9.4
16.5	15.8	17.8	18.1	(7.5)	17.5	17.4

06 지방세수입

■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수 호조('16년 75.5조원)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잠정)	
합 계	52.3 [6.4]	53.9 [3.1]	53.8 [-0.3]	61.7 [14.8]	71.0 [15.0]	75.5 [6.4]	(100.0)
취득세	13.9	13.8	13.3	16.4	20.8	21.7	(28.7)
지방소득세	9.5	10.3	10.3	9.7	12.8	13.1	(17.4)
재산세	7.6	8.0	8.3	8.8	9.3	9.9	(13.1)
자동차세	6.5	6.6	6.7	6.9	7.1	7.5	(9.9)
지방소비세	3.0	3.0	3.1	5.8	6.0	6.4	(8.5)
지방교육세	5.0	5.1	5.0	5.5	5.8	6.3	(8.3)
담배소비세	2.8	2.9	2.8	3.0	3.0	3.7	(4.9)
주민세	0.3	0.3	0.3	1.4	1.5	1.8	(2.4)
등록면허세	1.2	1.2	1.3	1.5	1.8	1.7	(2.3)
지역자원 시설세	0.8	0.9	0.9	1.1	1.4	1.4	(1.9)
레저세	1.1	1.1	1.0	1.1	1.1	1.1	(1.5)
기타	0.7	0.7	0.6	0.6	0.4	0.9	(1.2)

주: [ ]는 전년대비 증가율값, ( )는 전체 지방세수 중 세목별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2017.4.)

■ 시도별 지방세 징수액

(단위: 조원, %)

지역	2015년	2016년		
	결산액 (A)	징수액(잠정) (B)	증 감 (B-A)	증감율
합계	71.0	75.5	4.5	6.4
서울	17.0	18.0	1.0	5.8
부산	4.8	4.6	-0.2	-3.3
대구	2.9	3.0	0.1	4.1
인천	3.7	4.0	0.3	8.1
광주	1.6	1.7	0.1	8.1
대전	1.6	1.7	0.1	3.5
울산	1.8	2.0	0.2	10.5
세종	0.5	0.5	0.0	-2.4
경기	17.9	19.2	1.3	7.6
강원	1.6	1.9	0.3	16.7
충북	1.9	2.0	0.1	7.2
충남	2.8	3.1	0.3	10.0
전북	1.8	1.9	0.1	5.5
전남	2.0	2.2	0.2	12.0
경북	3.5	3.6	0.1	3.4
경남	4.5	4.7	0.2	4.4
제주	1.1	1.4	0.3	22.4

자료: 행정안전부(2017.4.)

07 총조세, 지방세 비중

■ 국세와 지방세 모두 높은 증가세('16년 318.1조원)

- 총조세 205.0조원('07년)→2016년 318.1조원('16년)
-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21.2%('07년)→23.7%('16년)

※ 단, 2016년 지방세액과 지방세 비중은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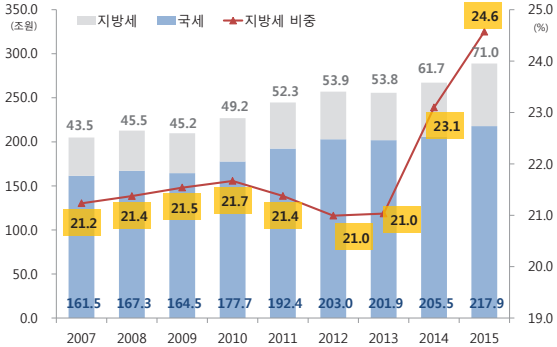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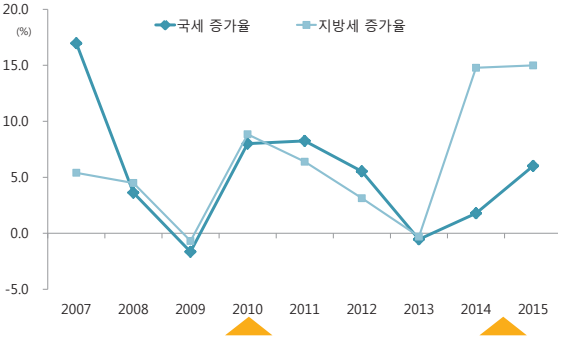

- 경기회복
- 지방소비세 도입 (부가가치세 5%)

- 경기회복, 부동산경기 호조
- 지방소비세 확대(5%→11%) 등록면허세·담배소비세 인상

08 조세부담률

■ 2016년 조세부담률 전년대비 0.9%p 상승(18.5% → 19.4%)

- 국민부담률은 전년대비 1.0%p 상승(25.3% → 26.3%)

▶ 조세부담률(%) = 총조세(국세 + 지방세) / 명목GDP × 100
국민부담률(%) = (총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명목GDP × 100

(단위: %)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국세부담률	지방세부담률
2007	19.6 [24.8]	15.5	4.2
2008	19.3 [24.6]	15.1	4.1
2009	18.2 [23.8]	14.3	3.9
2010	17.9 [23.4]	14.0	3.9
2011	18.4 [24.2]	14.4	3.9
2012	18.7 [24.8]	14.7	3.9
2013	17.9 [24.3]	14.1	3.7
2014	18.0 [24.6]	13.8	4.1
2015	18.5 [25.3]	14.0	4.5
2016	19.4 [26.3]	14.8	4.6

09 국제비교: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2015년 우리나라 18.5%,
OECD 25.1%, G7 25.0%

- 국민부담률, 2015년 우리나라 25.3%, OECD 34.3%, G7 35.5%

	2007	2008	2009	2010
한국	19.6	19.3	18.2	17.9
[국민부담률]	[24.8]	[24.6]	[23.8]	[23.4]
OECD평균	25.3	24.6	23.6	23.7
[국민부담률]	[33.8]	[33.2]	[32.4]	[32.6]
G7평균	24.4	24.1	23.0	23.1
[국민부담률]	[34.2]	[34.0]	[33.3]	[33.3]
미국	20.4	19.4	16.8	17.4
일본	18.1	17.4	15.9	16.2
영국	26.9	26.7	25.3	26.3
프랑스	26.7	26.4	25.1	25.9
독일	22.1	22.5	22.2	21.3
이탈리아	29.2	28.8	28.9	28.8
캐나다	27.5	27.1	27.2	26.1

주: 1) 국제비교는 OECD 자료의 한계상 2015년 자료값을 최근 실적치로 함
2) 우리나라는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는 2007년 대비 조세부담률 0.2%p 하락 (19.6%→19.4%), 국민부담률 1.5%p 상승(24.8%→26.3%)

자료: OECD Tax Database

(단위: %, %p)

2011	2012	2013	2014	2015	'15–'07
18.4	18.7	17.9	18.0	18.5	△1.1[1)]
[24.2]	[24.8]	[24.3]	[24.6]	[25.3]	[0.5][2)]
24.1	24.5	24.7	25.1	25.1	△0.2
[33.0]	[33.4]	[33.8]	[34.2]	[34.3]	[0.5]
23.7	24.2	24.6	24.8	25.0	0.6
[33.9]	[34.5]	[35.0]	[35.3]	[35.5]	[1.3]
18.4	18.6	19.5	19.7	20.1	△0.3
16.7	17.2	18.0	19.3	19.3	1.2
27.2	26.5	26.4	26.1	26.5	△0.4
26.9	27.8	28.5	28.5	28.6	1.9
21.9	22.4	22.6	22.6	22.9	0.8
29.0	30.8	30.9	30.7	30.3	1.1
26.0	26.3	26.3	26.5	27.1	△0.4

■ 조세부담률 비교: 한국 vs. OECD vs. G7

- OECD와의 격차: '07년 5.6%p → '15년 6.5%p
- G7과의 격차: '07년 4.8%p → '15년 6.4%p

※ 단, 최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상승('15년 18.5% → '16년 19.4%, 잠정)에 따라 조세부담률 격차는 감소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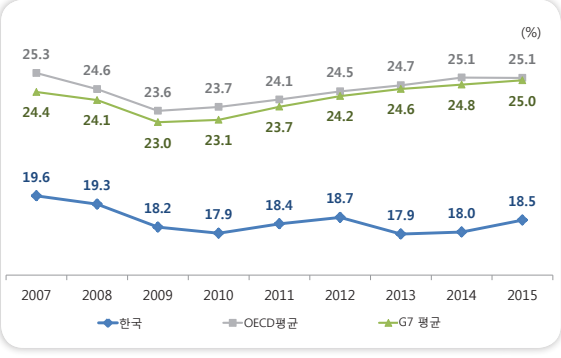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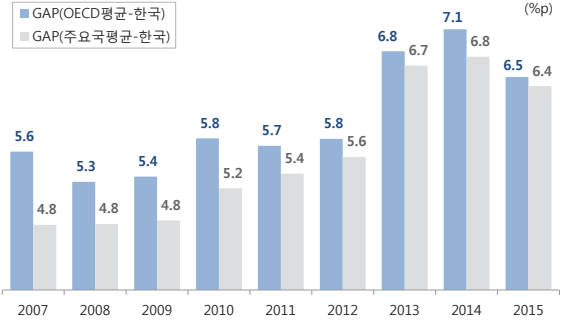

주: 국제비교는 OECD 자료의 한계상 2015년 자료값을 최근 실적치로 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국민부담률 비교: 한국 vs. OECD vs. G7

- OECD와의 격차: '07년 9.0%p → '15년 9.0%p
- G7과의 격차: '07년 9.4%p → '15년 10.3%p

※ 단, 최근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15년 25.3% → '16년 26.3%, 잠정)에 따라 국민부담률 격차는 감소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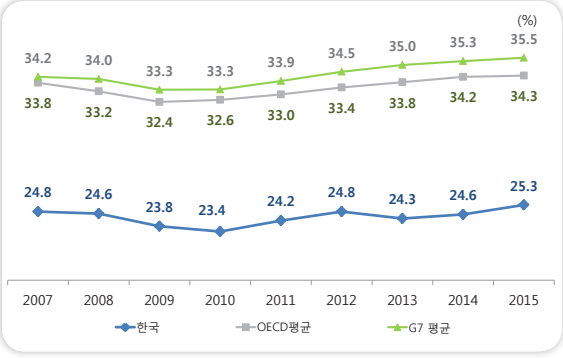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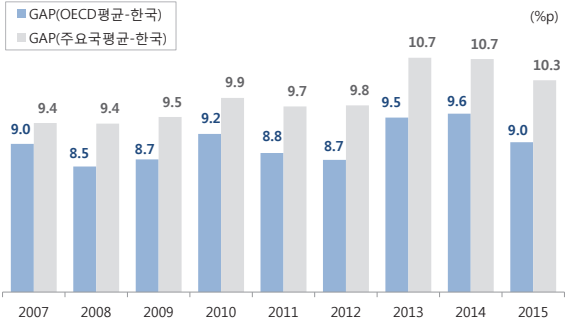

주: 국제비교는 OECD 자료의 한계상 2015년 자료값을 최근 실적치로 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변화: 2007년 vs. 2015년

- 하락: 17개국, 상승 18개국

▶ 하락 17개국: 아일랜드, 호주, 한국, 캐나다, 영국, 미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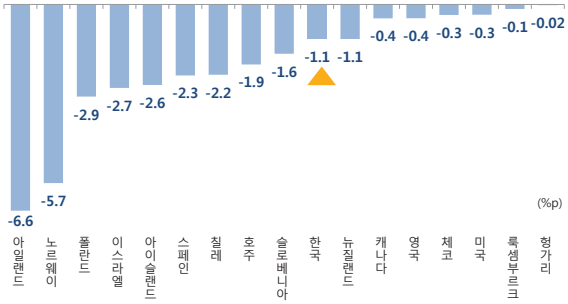

▶ 상승 18개국: 그리스, 프랑스, 일본, 독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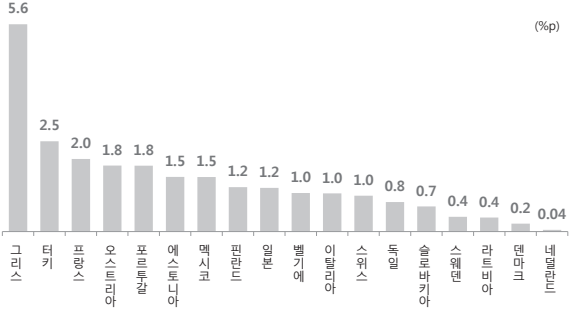

주: 1) 호주, 일본,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2014년 기준값임
2) 우리나라는 2016년 조세부담률(19.4%,잠정) 기준으로 0.2%p 하락
3) 단, 최근 조세부담률 상승('15년 18.5% → '16년 19.4%, 잠정) 감안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하락폭은 0.2%p로 감소할 예정

자료: OECD Tax Database

■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변화: 2007년 vs. 2015년

- 하락 16개국, 상승 19개국

▶ 하락 16개국: 아일랜드, 호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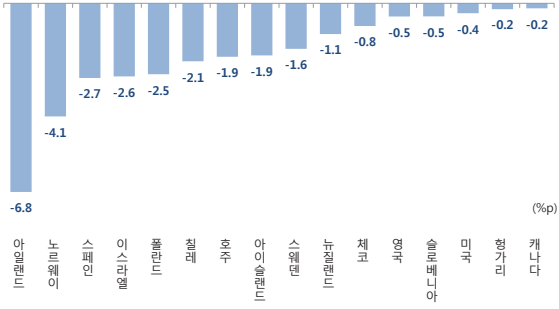

▶ 상승 19개국: 터키, 일본, 프랑스, 독일, 한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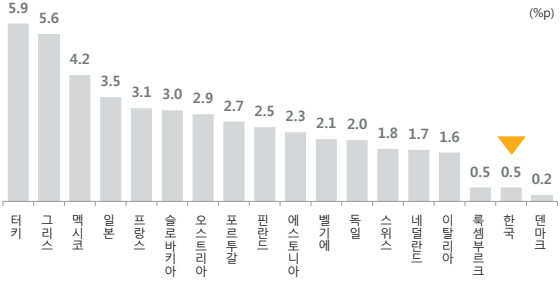

주: 1) 호주, 일본, 폴란드 등 국가는 자료 미발표로 2015년 대신 2014년값 적용
2) 우리나라는 2016년 국민부담률(26.3%,잠정) 기준으로 1.5%p 상승
3) 단, 최근 국민부담률 상승('15년 25.3% → '16년 26.3%, 잠정) 감안시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폭은 1.5%p로 확대될 예정

자료: OECD Tax Database

10 국제비교: 조세구조

■ 명목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

-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나 G7 대비 소득세·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재산세 비중이 높은 구조

[2015년 기준]

(단위: %)

	한국	OECD평균	G7평균
소득세	4.4	8.6	9.6
법인세	3.2	2.9	2.6
소비세	7.1	11.2	8.9
재산세	3.1	1.9	3.0
기 타	0.7	0.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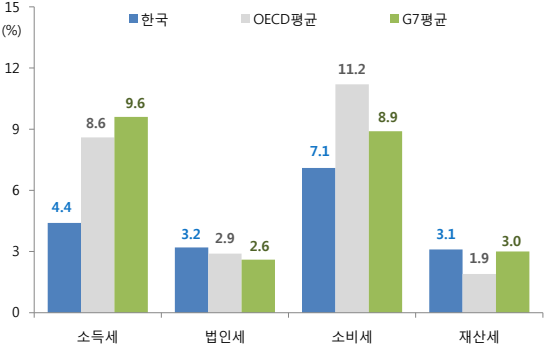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1 국제비교: 지방세 비중

■ 총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연방제 국가는 낮은 모습

  ※ 단, 지방이전재원 고려시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다름

▶ 연방제 국가(9개국)

(단위: %)

	미국	독일	평균
국세	55.5	50.9	65.1
지방세	44.5	49.1	34.9

주: 2014년 기준값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비연방제 국가(26개국)

(단위: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평균
국세	93.9	71.9	61.1	76.9	79.4
지방세	6.1	28.1	38.9	23.1	20.6

주: 2014년 기준값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Part 02

국 세

12 조세정책 주요 흐름(2008년 이후)

	소득세	법인세
2008 ↓ 2010	• 최고구간 제외 세율인하 ('09~'10) ※ 4개 과표, 최고세율 35%	• 법인세율 인하('08~'10) ※ 2개과표, 최고세율 인하 25%→22% • 최저한세율 인하('08~'10) ※ 최고세율 인하 15%→14%
감세	• 양도소득세 고율과세 완화 • 근로장려세제 확대('09~)	•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08) • R&D비용세액공제 영구화, 공제율 인상('08)
2011 ↓ 최근	• 3억원초과신설, 세율인상('12) ※ 5개 과표, 최고세율 38% • 최고구간 3억원→1.5억원 초과로 확대('14) • 5억원 초과구간 신설, 최고세율 인상('16) ※ 6개과표, 최고40%	• 중간 과표 신설, 최고세율 인하계획 철회('11) •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13~'14)
부분 증세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13) •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14) •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13~'16) • 자녀장려세제 도입('13)	• 임투공제의 고투공제전환, 대기업 공제 축소·폐지 ('12~'15) • R&D비용 및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축소('14~) •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14)

부가가치세	기타
• 세율 변화 없음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이양('09, 5%)	• 세율 변화 없음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 세율 변화 없음 •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08~'16, 금지금, 철스크랩 등) • 음식업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축소('11~'14) • 대형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과세 전환 및 면세 축소 ('14~'16)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 인상('14, 11%)	• 세율 변화 없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공제 축소 등('12) • 담배 개별소비세 과세('15) •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16)

13 국제비교: 주요 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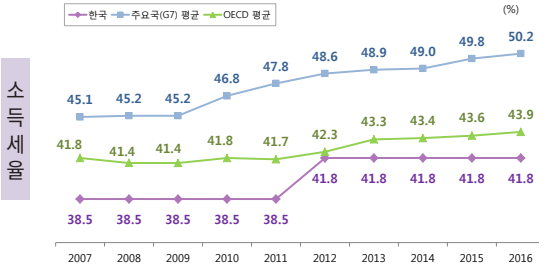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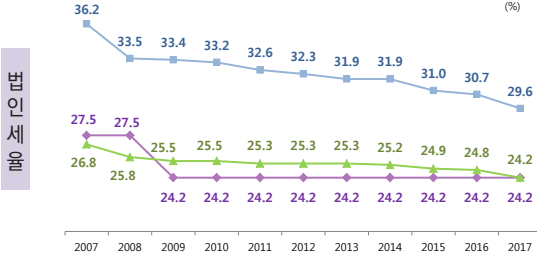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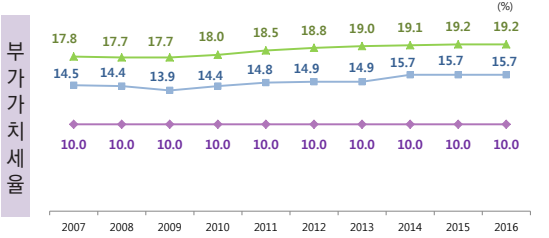

주: 1)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임
2) 법인세는 최근 OECD 자료의 업데이트를 반영하여 2017년 자료값을 포함
자료: OECD Tax Database

Part 02

국 세

소득세

14 소득세 과세체계

■ 소득세법상 열거된 사업·근로·이자 등 8가지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류과세

- 종합과세: 과세기간 중 발생소득을 합산, 누진세율 적용

  분리과세(그림*): 일부 소득은 별도 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종결
  ①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 6%　②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14%
  ③ 의료목적 등 연금소득 3~5%　④ 복권당첨금 등 20%/30% 등

- 분류과세: 소득이 장기간 집적·형성된 점을 감안, 별도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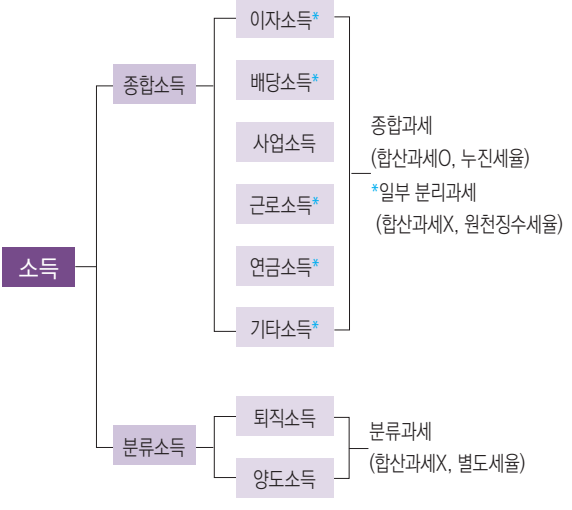

주: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도출한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

- 결정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세액공제+세액감면)

종합소득금액[1]	퇴직소득금액[2]	양도소득금액[3]
(−)종합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4] 적용)	× 양도소득 세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감면
= 종합소득 결정세액	= 퇴직소득 결정세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주: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연금소득의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제외)
2) 퇴직소득금액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3)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
4)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15 소득세 세율

■ (소득세 기본세율) 6개 과세표준 구간, 초과누진세율

- 과표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1.5억원/5억원 기준, 6%/15%/24%/35%/38%/40% 적용
  ※ 2008년 이후 과표구간수 증가, 최고세율 인상

(단위: 개, %)

과세표준 구간	2008	2009	2010	2012	2014	2017 현행
(과표구간수)	(4)	(4)	(4)	(5)	(5)	(6)
0~1,200만원	8	6	6	6	6	6
1,200~4,600만원	17	16	15	15	15	15
4,600~8,800만원	26	25	24	24	24	24
8,800만원~1.5억원	35	35	35	35	35	35
1.5~3억원					38	38
3~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주: 음영은 소득세율이 전년대비 변화된 과세표준 구간임

■ (양도소득세율) 토지·건물·부동산 양도차익과 주식양도차익에 다르게 적용

(단위: %)

구분 \ 년도		'07~'08	'09~'11	'12~'13	'14~'15	'16~
토지·건물·부동산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1~2년 보유	40	40	40	토지:40 주택:기본세율	토지:40 주택:기본세율
	1년 미만 보유	50	50	50	토지:50 주택:40	토지:50 주택:40
	1세대 3주택	60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1세대 2주택	50 (신설)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60 (신설)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10%p
	미등기	70	70	70	70	70
기타 자산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비상장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대주주:20 그 외:10
	기타	20	20	20	20	20
상장주식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30	30	30	30
	중소기업주식	10	10	10	10	대주주:20 그 외:10
	기타	20	20	20	20	20
파생						20(탄력5)

주: 1) 기본세율은 현행 6~40%의 누진 소득세율을 뜻함
2) 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 및 일부 1세대2주택(이사·상속·결혼등),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등은 비과세

16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 소득공제

- 단,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조특법 제132조의2)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및 연금보험료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공제	• 연금소득자만 해당
특별공제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전환('14년 이후)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근로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무주택, 1주택 근로자) 등 * 단, 한도설정
조특법상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무주택 근로자에 한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중소기업 벤처·창업 출자 등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 및 기부금 * 출자는 근로소득자에 한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소득공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기준 55%/30% 공제 * 단, 50~74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다자녀 · 6세이하 · 출생 및 입양 자녀공제 * 인원, 유형별
	• (특별세액공제) 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의 15% 공제 * 단, 2천만원초과 기부금 30% ②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지출액의 12% 공제 * 단, 장애인 15% 공제 ③ 표준공제: 근소자 13만원, 사업자 7만원 공제 * 단, 성실사업자 12만원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의 12% 공제 *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급여 5,500만원 이하 15%, 소득규모별 300~400만원 한도
	•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에 배당가산 된 배당소득의 11%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사업자의 복식기장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 단, 100만원 한도
	•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18년 말까지 발급에 대해 건당 200원 공제
	• (전자신고 공제) 전자신고된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 공제) 발급 건당 18원
	•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시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서 소득세 납부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중만큼 공제
	• (기타 조특법상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세액감면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정부간 협약에 의해 파견된 외국인 급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거주자의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 소득’
	• (조특법상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조합 배당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산림개발소득 세액감면’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17 소득세수 현황

■ 소득세는 2016년 68.5조원, 전체 국세대비 28.2%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소득세(B)	비중(B/A)
2007	161.5	38.9	24.1
2008	167.3	36.4	21.7
2009	164.5	34.4	20.9
2010	177.7	37.5	21.1
2011	192.4	42.3	22.0
2012	203.0	45.8	22.5
2013	201.9	47.8	23.7
2014	205.5	53.3	25.9
2015	217.9	60.7	27.9
2016	242.6	68.5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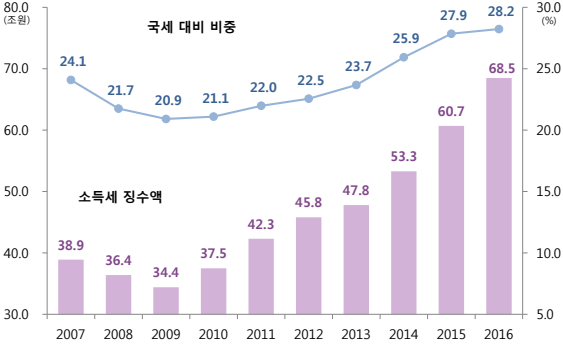

18 소득세 과세 현황

■ 종합소득자 vs. 근로소득자

(2015년 소득 기준)

	종합소득자	근로소득자
과세인원	• 548.3만명	• 1,733.3만명
면세자	• 78.6만명 * 소득 1억원 초과 1,579명 * 소득 3억원 초과 165명 ※ 종합소득 신고(필요경비 제외) 기준	• 810.4만명 (면세자 비중 46.8%) * 소득 1억원 초과 1,477명 (면세자 0.01%) * 소득 3억원 초과 : 해당 정보 없음
전체소득	• 162.0조원	• 566.7조원
1인당 평균소득	• 3.0천만원 * 비과세, 필요경비 등이 제외된 금액임	• 2.4천만원 * 비과세,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기준 (이를 포함, 3.3천만원)
비과세	• 해당정보 없음	• 4.2조원(급여총계의 0.7%)
1인당 평균세액	• 5.0백만원	• 3.1백만원
1인당 평균 감면액	• 소득공제 5.0백만원 • 세액공제·감면 2.0백만원	• 소득공제 6.7백만원 * 비과세, 근소공제 10.9백만원 별도 • 세액공제·감면 1.4백만원
평균 실효세율	• 평균 14.5%	• 평균 5.0%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1인당 평균 비과세소득 및 비중: 소득구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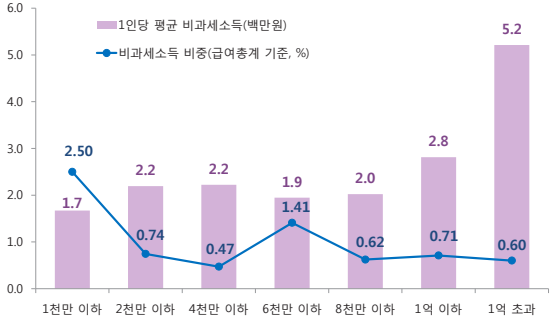

주: 2015년 근로소득 기준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1인당 평균 세액공제·감면금액 및 비중: 소득구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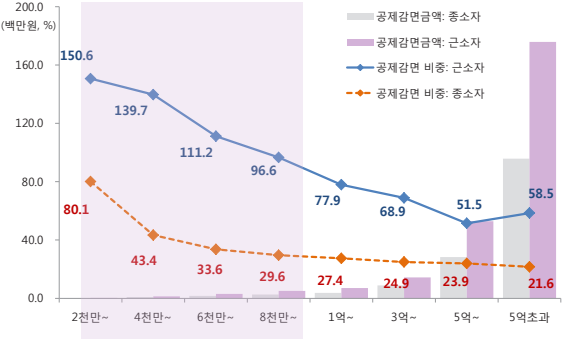

주: 1) 2015년 근로소득 기준
2) 공제감면 비중을 소득대비 감면액 비율로, 저소득구간에서 전부 100% 상회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19 소득세 평균 실효세율

■ 종합소득자, 2015년 소득 기준 14.5%

- 실효세율(%) = (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100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월결손금 + 배당가산액 등

(단위: 만명, 조원,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종합소득 금액(A)	결정세액 (B)	실효세율 (B/A)
~1,200만원	303	23.4	0.3	1.1
~4,600만원	135	40.0	2.4	5.9
~8,800만원	36	25.9	2.9	11.3
~1.5억원	15	18.7	3.2	17.0
~5억원	11	28.1	7.1	25.3
5억원 초과	2	25.0	7.8	31.3
합계 및 평균	548	162.0	23.6	14.5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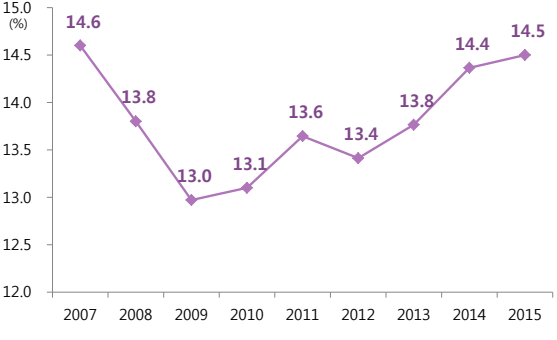

■ 근로소득자, 2015년 소득 기준 5.0%

- 실효세율(%) = (결정세액/급여총계)×100

  ※ 급여총계는 비과세 등 차감 없이 모든 근로소득의 합계액임

(단위: 만명, 조원, %)

과세표준 규모별	인원	급여총계 (A)	결정세액 (B)	실효세율 (B/A)
~1,200만원	756	128.0	0.2	0.2
~4,600만원	580	261.0	7.2	2.8
~8,800만원	121	108.4	9.2	8.5
~1.5억원	24	32.9	4.8	14.7
~5억원	7	19.4	4.6	23.8
5억원 초과	1	6.8	2.2	31.8
합계 및 평균	1,733	566.7	28.3	5.0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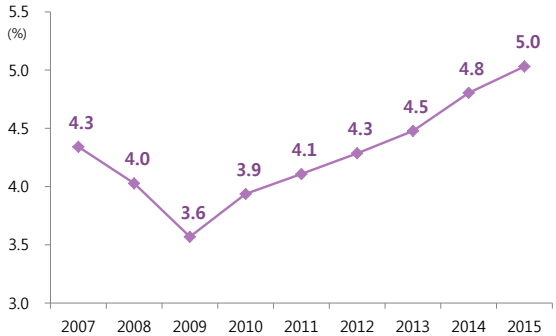

■ 근로소득자 과표구간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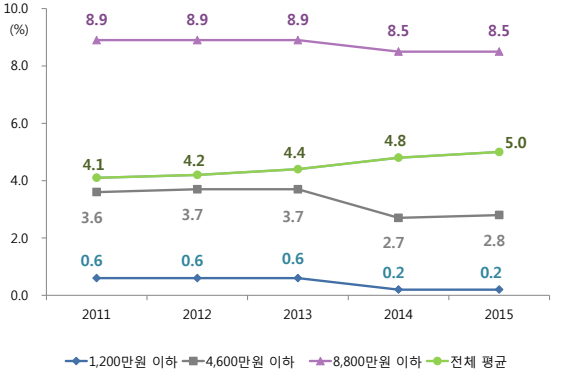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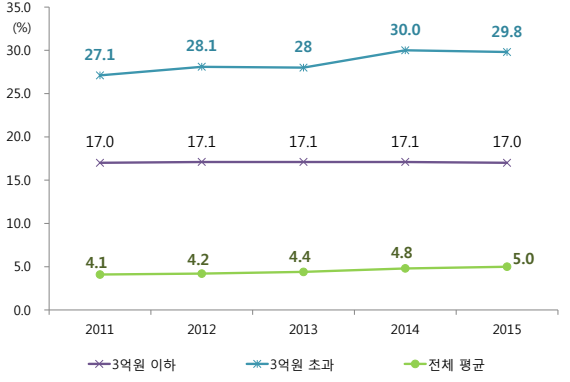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2016 국세통계연보」

20 국제비교: 소득세 과표구간수

과표 개수	2007		2016	
	국가수	국가명	국가수	국가명
2개	1개국	아일랜드	3개국	아일랜드, 덴마크, 포르투갈
3개	6개국	덴마크, 독일,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4개국	독일, 그리스, 스웨덴, 영국
4개	6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2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5개	6개국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8개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노르웨이, 스페인
6개	2개국	일본, 미국	1개국	핀란드
7개	1개국	포르투갈	3개국	오스트리아, 일본, 미국
10개	1개국	룩셈부르크	0개국	-
11개	1개국	스위스	2개국	멕시코, 스위스
19개	0개국	-	1개국	룩셈부르크

주: 2016년 세법개정(5억원 초과구간 신설)에 따라 현행 과표구간은 6개로 증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1 국제비교: 소득세 최고세율

■ (중앙정부 기준) 2016년 우리나라 최고세율 38%는 OECD 국가 중 18위 수준※

- 2016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36.2%

※ 단, 2017년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8% → 40%)

	2007	2008	2009	2010	2011
프랑스	40.0	40.0	40.0	40.0	41.0
독일	45.0	45.0	45.0	45.0	45.0
일본	40.0	40.0	40.0	40.0	40.0
영국	40.0	40.0	40.0	50.0	50.0
이탈리아	43.0	43.0	43.0	43.0	43.0
미국	35.0	35.0	35.0	35.0	35.0
한국	35.0	35.0	35.0	35.0	35.0
캐나다	29.0	29.0	29.0	29.0	29.0
주요국 평균	38.9	38.9	38.9	40.3	40.4
OECD평균	35.7	35.2	34.3	35.3	34.3

주: ( )는 OECD 35개국 중 순위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45.0	45.0	45.0	45.0	45.0	(7)
45.0	45.0	45.0	45.0	45.0	(7)
40.0	40.0	40.0	45.0	45.0	(7)
50.0	45.0	45.0	45.0	45.0	(7)
43.0	43.0	43.0	43.0	43.0	(13)
35.0	39.6	39.6	39.6	39.6	(17)
38.0	38.0	38.0	38.0	38.0	(18)
29.0	29.0	29.0	29.0	33.0	(21)
41.0	40.9	40.9	41.7	42.2	
35.3	35.9	36.0	35.9	36.2	

■ (지방세 등[1]) 포함 기준) 2016년 우리나라 최고세율 41.8%는 OECD 국가 중 23위 수준

- 2016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43.9%

※ 단, 2017년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1.8% → 44.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본	50.0	50.0	50.0	50.0	50.0	50.0
프랑스	45.8	45.8	45.8	46.7	50.5	54.4
캐나다	46.4	46.4	46.4	46.4	46.4	48.0
이탈리아	44.9	44.9	44.9	45.2	48.5	48.6
독일	47.5	47.5	47.5	47.5	47.5	47.5
미국	41.4	41.9	41.9	41.9	41.9	41.8
영국	40.0	40.0	40.0	50.0	50.0	50.0
한국	38.5	38.5	38.5	38.5	38.5	41.8
주요국 평균	45.1	45.2	45.2	46.8	47.8	48.6
OECD평균	41.8	41.4	41.4	41.8	41.7	42.3

주: 1) ( )는 OECD 35개국 중 순위로 2016년 기준임
2) 파란색은 순위가 낮아졌음을, 빨간색은 높아졌음을 표시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와 소득세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포함

(단위: %)

2013	2014	2015	2016	순위		
				'07	'16	변동
50.8	50.8	55.9	55.9	(6)	(3)	(3↑)
54.5	54.5	54.5	54.5	(11)	(6)	(5↑)
49.5	49.5	49.5	53.5	(10)	(8)	(2↑)
48.6	49.1	50.1	48.8	(12)	(15)	(3↓)
47.5	47.5	47.5	47.5	(8)	(17)	(9↓)
46.3	46.3	46.3	46.3	(18)	(19)	(1↓)
45.0	45.0	45.0	45.0	(21)	(21)	-
41.8	41.8	41.8	41.8	(27)	(23)	(4↑)
48.9	49.0	49.8	50.2			
43.3	43.4	43.6	43.9			

■ (최고세율 변화) 2007년 vs. 2016년

- 세율 인상 22개국
- 세율 인하 10개국, 세율 유지 3개국

▶ 세율 인상 22개국: 포르투갈,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한국 등

※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지방세 포함, 41.8%→44.0%) 감안시, 우리나라의 2007년 대비 소득세율 인상폭은 5.5%p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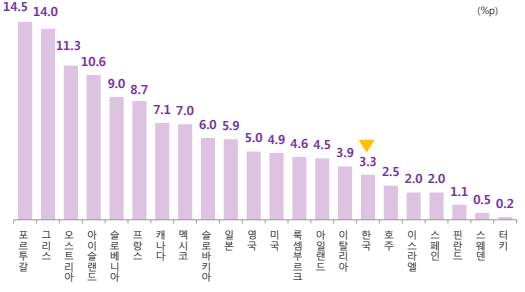

▶ 세율 인하 10개국/유지 3개국: 헝가리, 덴마크 등/독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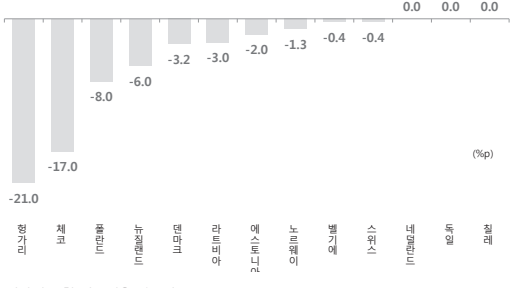

주: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기준임

자료: OECD Tax Database

22 국제비교: 소득세 부담

■ 2014년 기준 명목GDP 대비 소득세 부담 4.0%

- 2014년 OECD 평균 8.4%
- 우리나라는 2010년 3.3%에서 2014년 4.0%로 상승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캐나다	10.7	11.0	11.3	11.2	11.3
이탈리아	11.2	11	11.6	11.6	11.3
미국	8.2	9.3	9.3	9.9	10.2
독일	8.5	8.8	9.3	9.5	9.6
영국	9.3	9.4	9.0	9.0	8.8
프랑스	7.2	7.4	8.0	8.4	8.5
일본	5.1	5.3	5.5	5.8	6.1
한국	3.3	3.5	3.7	3.7	4.0
OECD평균	7.7	7.8	8.1	8.3	8.4

자료: OECD Tax Database

23 소득세 최근 개정 동향

- 2009~2010년 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감세
- 2011년 이후 최근까지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저소득·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금융소득 과세강화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 급증
-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 소득세율 인하 후 최고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단위: %)

2008년		2009년		2010년	
4단계		4단계		4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이하	8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7	4,600만원이하	1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6	8,800만원이하	2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8,800만원초과	35

▼

2012년		2014년		2017년	
5단계		5단계		6단계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과표구간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이하	24
3억원이하	35	1.5억원이하	35	1.5억원이하	35
3억원초과	38	1.5억원초과	38	5억원이하	38
				5억원 초과	40

주: 파란색은 세율 인하, 빨간색은 세율 인상 부분임

■ 소득세 금융소득 과세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3년)

	1996~2001년	2002~2012년	2013년~
과세단위	부부합산	개인단위	개인단위
기준금액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주: 1998~2000년 귀속 소득분은 외환위기 여파 등을 고려하여 과세 유보

• 주식 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완화

(지분율, 시가총액)

시행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주식	
1999.1.	5%							
2000.1.	3%	100억원						
2005.8.	(동일)		5%	50억원				
2013.7.	2%	50억원	4%	40억원	4%	10억원		
2016.4.	1%	25억원	2%	20억원	(동일)		(코스피 동일)	
2017.1.	(동일)		(동일)		(동일)		4%	25억원
2018.4.	1%	15억원	2%	15억원	(동일)		4%	15억원
2020.4.	1%	10억원	2%	10억원	(동일)		4%	10억원

• 중소기업 대주주 세율 인상

중소기업 대주주	~2015년	2016년~
세율	10%	20%

•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20% 적용

('16.1.1. 이후, 75%내 탄력 운용)

■ 해외사례: 상장주식 관련 소액주주 과세 현황

	양도소득세	거래세	배당소득세
미국	단기투자: 10~39.6% 장기투자: 0%/15%/20%	없음	0%/15%/20%
영국	18%/28%	0.5%	10%/32.5%/37.5%
일본	20% (소액 상장주식 비과세)	없음 ('89.3, 0.55% → '99.4 폐지)	20%
독일	25%	없음[1)]	25%
벨기에	없음 (투기목적시 33% 적용)	0.25%[1)]	25%
대만	2013년 도입	0.6% (매입·매도시 각각 0.3%)	20%
한국	없음 (일부 대주주만 적용)	0.3%	14%

주: 1)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EU 11개국의 경우, 금융기관거래에 대해서만 2016년부터 금융거래세(주식 0.1%, 파생금융상품 0.01%, 채권 0.1%) 과세 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13년)

공제 구분			2013	2014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150	150
		배우자공제	150	150
		부양가족공제	150	150
	추가공제	경로우대자공제	100(70세 이상)	100(70세 이상)
		장애인공제	200	200
		부녀자공제	50	50
		6세이하 공제	100	소득공제 폐지 → 세액공제
		출산·입양공제	200	소득공제 폐지 → 세액공제
		한부모가족공제	100	100
		다자녀추가공제	100 +(자녀수-2)×200	소득공제 폐지 → 세액공제

주: 음영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항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단위: 만원)

공제 구분			2013	2014
특별공제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전액
		보장성보험료	불입액, 한도100만원	소득공제 폐지 →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본인·노인·장애인	총급여 3% 초과 전액	소득공제 폐지 → 세액공제
		부양가족	상동, 한도700만원	
	교육비	본인	전액	소득공제 폐지 → 세액공제
		취학전아동	300 300	
		초중고		
		대학	900	
		장애인특수교육	전액	
	기부금		법정:전액, 지정:30%	
	표준공제		근로자100, 사업자60(성실100)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한도400만원	소득공제 폐지 →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 급증

-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의 영향('13년)

(단위: 만명, %)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신고인원	1,190.3	1,517.7	1,554.0	1,576.8	1,636.0	1,668.7	1,733.3
면세자	581.5	595.5	562.2	523.1	530.5	802.4	810.4
비중	48.9	39.2	36.2	33.2	32.4	48.1	46.8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015년 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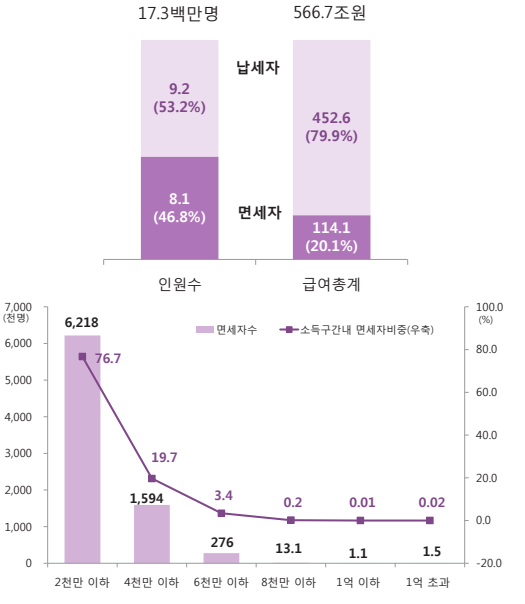

■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

(단위: %)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2005	48.9	32.6	18.3	31.8
2006	47.6	33.0	21.1	32.2
2007	42.2	32.7	21.8	32.4
2008	43.3	36.4	25.2	32.1
2009	40.4	41.7	26.4	33.9
2010	39.2	40.9	25.5	34.0
2011	36.2	36.9	23.1	33.8
2012	33.2	35.8	25.8	33.6
2013	32.4	35.8	25.1	33.5
2014	48.1	35.0	–	–
2015	46.8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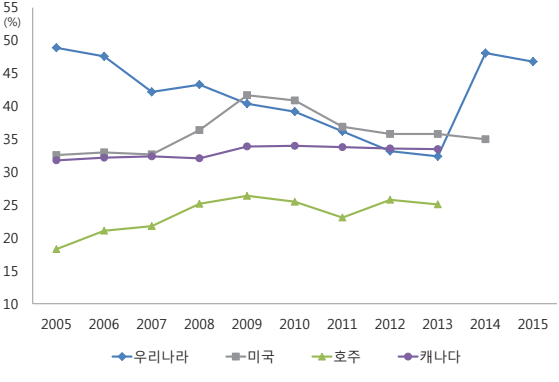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2017

■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table>
<tr><th>개정
(적용)</th><th>2008년
(2009년~)</th><th>2011년
(2012년~)</th><th>2012년
(2013년~)</th></tr>
<tr><td>적용
대상</td><td>근로소득자</td><td>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td><td>(좌 동)
2015년부터
자영업자 포함
(단, 고소득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제외)</td></tr>
<tr><td>신청
제외자</td><td colspan="2">신청일 직전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자</td><td>신청연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생계 급여를
받은 자</td></tr>
<tr><td>부양
자녀</td><td>1인
(18세미만)</td><td>무자녀가구 추가
(단, 배우자 필요)</td><td>(좌 동)
※ 60세 이상
단독가구 가능</td></tr>
<tr><td>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td><td>부부합산
1,700만원 미만,
최대 120만원
지급</td><td><table><tr><th>부양
자녀</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없음</td><td>1,300</td><td>70</td></tr><tr><td>1인</td><td>1,700</td><td>140</td></tr><tr><td>2인</td><td>2,100</td><td>170</td></tr><tr><td>3인~</td><td>2,500</td><td>200</td></tr></table></td><td>(좌 동)</td></tr>
<tr><td>자녀장려
세제</td><td>–</td><td>–</td><td>–</td></tr>
<tr><td>재산
요건</td><td>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1억원 미만</td><td>(좌 동)</td><td>(좌 동)</td></tr>
<tr><td>주택 요건</td><td>무주택
(5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td><td>무주택
(6천만원 이하
1주택 포함)</td><td>(좌 동)</td></tr>
</tabl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table>
<tr><th>2014년
(2014년~)</th><th>2016년 · 2017년
(2017년~)</th></tr>
<tr><td>(좌 동)</td><td>(좌 동)</td></tr>
<tr><td>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단, 자녀장려금 수급불가)</td><td>(좌 동)</td></tr>
<tr><td>(좌 동)
(단, '16년 50대이상,
'17년 40대이상 가능)</td><td>(좌 동)
(단, '18년 30대 이상 가능)</td></tr>
<tr><td><table><tr><th>구성</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단독 가구</td><td>1,300</td><td>70</td></tr><tr><td>홑벌이</td><td>2,100</td><td>170</td></tr><tr><td>맞벌이</td><td>2,500</td><td>210</td></tr></table></td><td><table><tr><th>구성</th><th>소득
기준
(만원)</th><th>최대
지급액
(만원)</th></tr><tr><td>단독 가구</td><td>1,300</td><td>77</td></tr><tr><td>홑벌이</td><td>2,100</td><td>185</td></tr><tr><td>맞벌이</td><td>2,500</td><td>230</td></tr></table></td></tr>
<tr><td>2015년 지급분부터 적용
자녀 1인당: 30~50만원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td><td>(좌 동)</td></tr>
<tr><td>1억 4천만원 미만
(1억원 초과시 장려금의 50%만 수급)</td><td>근로장려금 1억 4천만원 미만(좌동),
자녀장려금 2억원 미만</td></tr>
<tr><td>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가격기준 삭제)</td><td>(폐 지)</td></tr>
</table>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지급연도 기준)

연도	가구수 (만가구)	가구당금액 (만원)	총 지급액 (억원)
2009	59	77	4,537
2010	57	77	4,369
2011	52	77	4,020
2012	75	82	6,140
2013	78	72	5,618
2014	85	92	7,745
2015	128 [107]	82 [61]	10,566 [6,579]
2016	138 [93]	75 [61]	10,280 [5,507]

주: [ ]는 자녀장려금 지급 현황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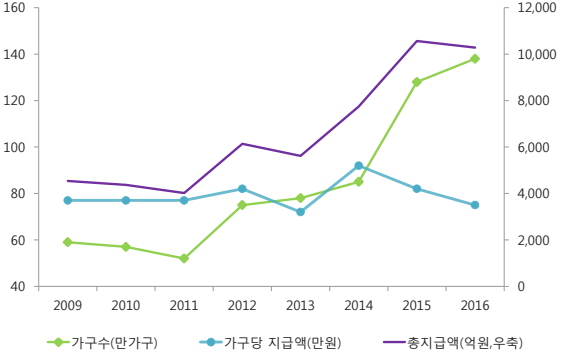

- 소득종류별, 총급여규모별 지급 현황: 201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가구수(만가구)	금액(억원)	가구당(만원)
근로소득	92.5	6,654.0	71.9
~1천3백만원	67.4	4,667.6	69.3
~2천1백만원	22.9	1,912.3	83.6
~2천5백만원	2.3	74.2	33.0
~4천만원	–	–	–
사업소득	45.4	3,626.5	79.9
~1천3백만원	30.8	2,480.7	80.5
~2천1백만원	12.4	1,075.6	86.8
~2천5백만원	2.2	70.1	32.4
~4천만원	–	–	–

자녀장려금	가구수(만가구)	금액(억원)	가구당(만원)
근로소득	57.4	3,391.7	59.1
~1천3백만원	15.7	1,108.5	70.8
~2천1백만원	13.7	957.9	70.1
~2천5백만원	6.0	377.4	63.3
~4천만원	–	–	–
사업소득	35.2	2,214.9	62.9
~1천3백만원	10.7	765.4	71.2
~2천1백만원	7.8	554.8	71.3
~2천5백만원	3.7	253.0	67.6
~4천만원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Part 02

국 세

법인세

24 법인세 과세체계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감면을 차감

총수입

(−) 총비용
(±)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 ,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 ①이월결손금(10년 이내)
- ②비과세소득(공익신탁재산소득 등)
- ③소득공제(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10%
- 2~200억원: 20%
- 200억원 초과: 22%
- *조합법인: 9%(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시 12%)

↓

산출세액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 · 미납부가산세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①원천납부세액
- ②중간예납세액
- ③수시부과세액

↓

자진납부세액
(고지세액)

토지 등 양도소득
양도소득 × (법인세율+추가세율*) *지가급등 지역10%, 주택·비사업용 토지 10%(미등기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5 법인세 과세대상

납세 의무자	내국 법인	•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외국 법인	•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과세 대상	내국 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 ※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 ※ 외국납부 법인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외국 법인	•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한함 ※ 원천지국 과세원칙(source principle) ※ 과세소득: 이자·배당·부동산·사업소득 등 10가지 (법인세법 제93조)
과세 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 결산상 당기순이익±세무조정 ※ 세무조정: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가산조정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감산조정 (예) 의제배당: 이익(익금산입) 차입자본 이자, 실물자본 감가상각: 비용(손금산입)	
과세 표준	• 각 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국제비교

글로벌 과세체계	• 국내소득과 해외소득 모두 과세 • OECD 국가 중 7개국: 한국, 미국, 멕시코, 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영토주의 과세체계	•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나머지 OECD 국가들(28개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6 법인세 최저한세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 1991년 시행, 각종 조세감면에 대해 총량 한도를 설정 함으로써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

  ※ 단,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이월공제 가능

[해외사례]

- 미국(20%), 대만(12%), 멕시코(16.5%) 등 이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운영

  ※ 일본은 최저한세 제도 대신, 감면제도별로 산출세액의 10~20% 선에서 세액공제 · 감면의 한도 설정

- 일부 세액공제 · 감면 항목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이를 감안 시 면세기업 발생 가능

(단위: 억원)

최저한세 적용제외 주요 항목	중소기업	대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630	38,837
R&D비용 세액공제	9,844	71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149	-
수도권밖 이전 공장·본사 세액감면	238	766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201	12
외국인투자 법인세 세액감면	153	1,320

주: 2015년 신고연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27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 (법인세율) 2008~2010년 인하, 2011년 중간 과표구간 신설, 이후 3단계 누진세율 구조 유지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1~ (현행)
1억원	13%	11%	11%	10%	10%
1~ 2억원	25%				
2~200억원		25%	22%	22%	20%
200억원 초과					22%

■ (최저한세율※)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2008~2010년 인하, 2013~2014년 대기업 중심 세율인상

※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한 세감면을 감안, 당해연도에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수준

과세표준 구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현행)
100억원	13%	13%	11%	10%	10%	10%
100~1,000억원				11%	12%	12%
1,000억원 초과	15%	15%	14%	14%	16%	17%
중소기업	10%	8%		7%		

주: 음영부분은 세율 변경이 이루어진 시기를 표시

28 법인세수 현황

■ 법인세는 2016년 52.1조원, 국세대비 21.5%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법인세(B)	비중(B/A)
2007	161.5	35.4	21.9
2008	167.3	39.2	23.4
2009	164.5	35.3	21.5
2010	177.7	37.3	21.0
2011	192.4	44.9	23.3
2012	203.0	45.9	22.6
2013	201.9	43.9	21.7
2014	205.5	42.7	20.8
2015	217.9	45.0	20.7
2016	242.6	52.1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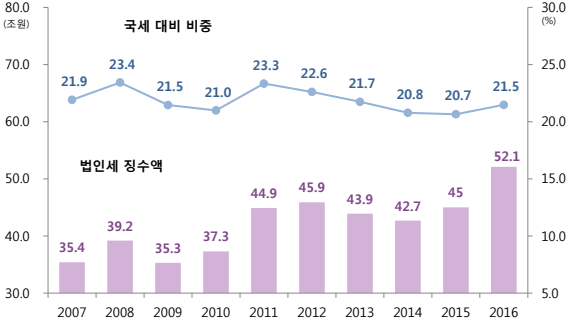

29 법인수 추이

■ 신고법인수: 1990년 6.3만개 → 2016년 64.5만개

■ 2016년 대기업 12.7만개, 중소기업 51.8만개로 2:8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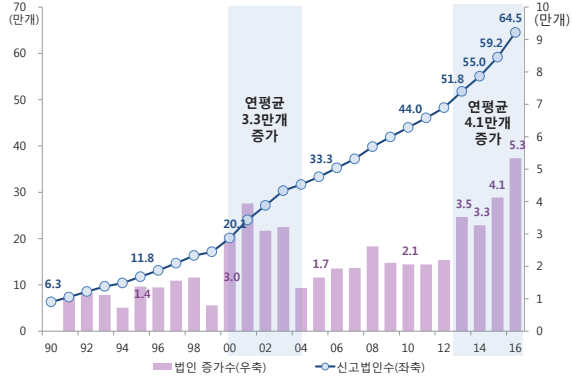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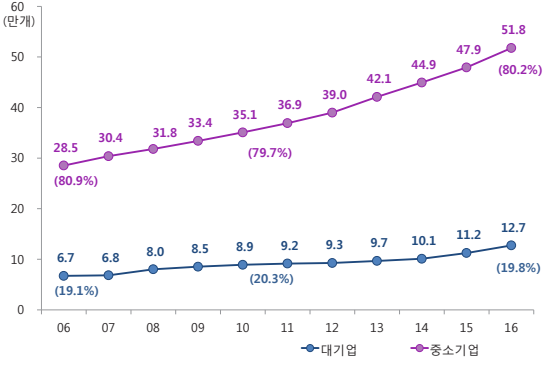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30 법인세 과세 현황

■ 신고법인수 64.5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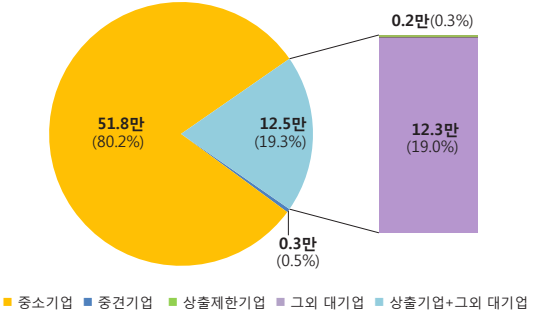

■ 세부담 법인수 34.0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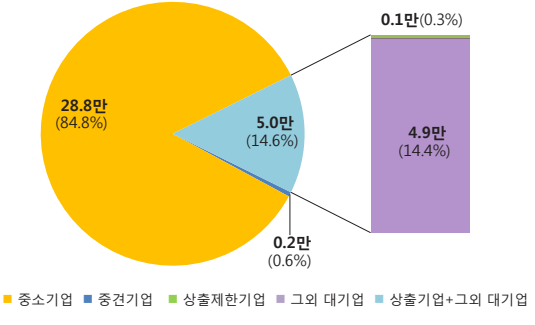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조기공개통계(2017.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기업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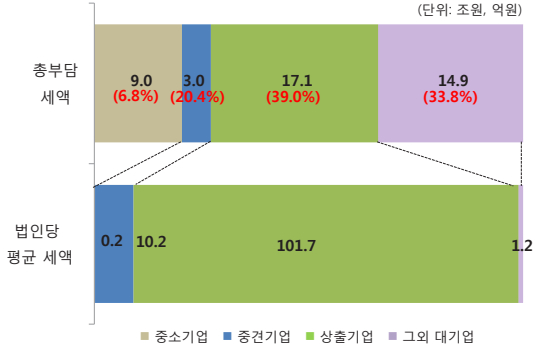

과표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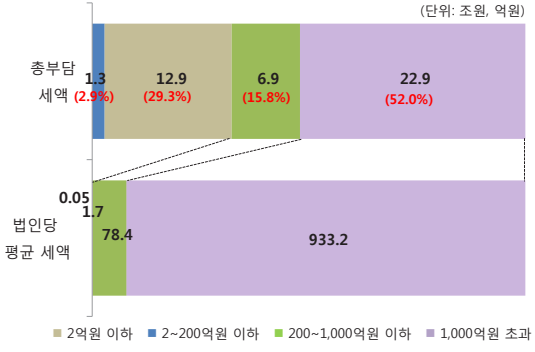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조기공개통계(2017.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31 법인세 과세현황: 기업규모별

(단위: 만개, 조원, %, %p)

구분		전체	일반기업				중소기업
				중견	상출	기타	
신고법인수		64.5	12.7	0.3	0.2	12.3	51.8
흑자법인수		42.1	7.7	0.2	0.1	7.4	34.4
(비중)		(65.3)	(60.7)	(71.3)	(62.8)	(60.4)	(66.5)
당기순이익		6.0	24.2	67.3	877.5	10.8	1.9
각사업연도소득		7.2	28.7	84.0	1,076.3	12.2	2.2
비과세*		6,114	5,505	2	135	5,368	609
소득공제*		40,787	40,550	-	3,962	36,588	236
과세표준		264.1	193.8	17.0	100.0	76.9	70.2
산출세액		52.6	41.1	3.5	21.8	15.8	11.5
공제·감면공제	전체	8.8	6.2	0.5	4.7	1.0	2.6
	(비중)	(100.0)	(70.8)	(5.8)	(53.8)	(11.2)	(29.2)
	[법인당*]	[0.4]	[10.6]	[4.1]	[88.4]	[2.4]	[0.1]
총부담세액	전체	43.9	35.0	3.0	17.1	14.9	9.0
	(비중)	(100.0)	(79.6)	(6.8)	(39.0)	(33.8)	(20.4)
	[법인당*]	[1.3]	[6.8]	[15.8]	[182.7]	[3.0]	[0.3]
명목세율(A)		19.9	21.2	20.4	21.8	20.6	16.4
실효세율(B)		16.6	18.0	17.5	17.1	19.3	12.8
세율감소(A-B)		3.3	3.2	2.9	4.7	1.3	3.6

주: 1) 2015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2)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국세청, 조기공재통계(2017.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32 법인세 과세현황: 과표구간별

(단위: 만개, 조원, %, %p)

구분		전체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1천억원 이하	5천억원 이하	5천억원 초과
신고법인수		64.5	56.3	8.1	0.0891	0.0198	0.0049
흑자법인수		42.1	34.1	7.9	0.0869	0.0193	0.0048
(비중)		(65.3)	60.5)	(98.7)	(97.5)	(97.5)	(98.0)
당기순이익		251.3	47.5	72.3	27.2	35.9	68.5
각사업연도소득		304.9	38.2	90.1	37.5	41.5	97.7
비과세*		6,114	5,447	410	250	0.28	6.8
소득공제*		40,787	37,453	3,334	-	-	-
과세표준		264.1	14.2	85.8	36.6	40.7	86.7
산출세액		52.6	1.5	15.5	7.7	8.9	19.1
공제·감면	전체	8.8	0.3	2.6	0.8	1.0	4.2
	(비중)	(100.0)	(2.9)	(29.8)	(9.0)	(11.1)	(47.2)
	[법인당*]	[0.4]	[0.02]	[0.46]	[11.6]	[58.4]	[865.0]
총부담세액	전체	43.9	1.3	12.9	6.9	7.9	14.9
	(비중)	(100.0)	(2.9)	(29.3)	(15.8)	(18.0)	(34.0)
	[법인당*]	[1.3]	[0.05]	[1.7]	[78.4]	[404.5]	[3,048.2]
명목세율(A)		19.9	10.5	18.0	21.1	21.8	22.0
실효세율(B)		16.6	8.9	15.0	18.9	19.5	17.2
세율감소(A-B)		3.3	1.6	3.0	2.1	2.4	4.8

주: 1) 2015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의 단위는 억원임
2) 명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100,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자료: 국세청, 조기공재통계(2017.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33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 (외국납부세액 제외) 2015년 16.6%

-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산출 (「국세통계연보」 상의 자료값에 해당)

(단위: %, %p)

	2011	2012	2013	2014	2015	'15-'11
전체	16.8	16.0	16.0	16.1	16.6	-0.2
1억원 이하	8.6	8.6	8.8	8.7	8.8	0.2
1~2억원	8.3	8.3	8.4	8.3	8.3	0.0
2~5억원	10.9	10.5	10.7	10.6	10.6	-0.3
5~10억원	13.7	12.9	13.1	13.1	13.4	-0.3
10~20억원	15.3	14.2	14.6	14.8	14.9	-0.4
20~50억원	16.4	15.4	15.5	15.8	16	-0.4
50~100억원	17.3	16.1	16.6	16.5	17.1	-0.2
100~200억원	17.9	16.5	16.7	17.3	17.4	-0.5
200~500억원	18.9	17.7	17.7	18.0	18.5	-0.4
500~1,000억원	18.6	18.6	18.9	18.8	19.5	0.9
1,000~5,000억원	19.1	18.7	18.4	18.7	19.5	0.4
5,000억원 초과	17.1	16.4	16.4	16.4	17.2	0.1

주: 1) 법인세 국내신고세액에 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같다고 가정)을 제외하고 분석
2) 법인세 귀속연도 기준값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외국납부세액 포함) 2015년 17.7%

- 법인세 납부세액에 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산출

(단위: %, %p)

	2011	2012	2013	2014	2015	'15-'11
전체	17.9	17.1	17.2	17.7	17.7	-0.1
1억원 이하	8.6	8.6	8.8	8.7	8.7	0.2
1~2억원	8.3	8.3	8.4	8.3	8.3	0.0
2~5억원	10.9	10.5	10.7	10.6	10.6	-0.2
5~10억원	13.8	12.9	13.1	13.2	13.2	-0.4
10~20억원	15.4	14.3	14.6	14.8	14.8	-0.4
20~50억원	16.7	15.6	15.7	16	16	-0.5
50~100억원	17.6	16.5	16.9	16.8	16.8	-0.2
100~200억원	18.4	17	17.3	17.8	17.8	-0.5
200~500억원	19.4	18.4	18.5	18.8	18.8	-0.4
500~1,000억원	19.1	19.5	19.5	19.6	19.6	1.1
1,000~5,000억원	20.2	19.7	20.1	20.6	20.6	0.5
5,000억원 초과	19	18.5	18.9	19.6	19.6	0.7

주: 1) 법인세 국내신고세액에 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액과 같다고 가정)을 제외하고 분석
2) 법인세 귀속연도 기준값임

자료: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 (세율) 2015년 평균 명목세율 19.8%, 실효세율 16.6%

- 평균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 3.7%p('07년) → 3.2%p('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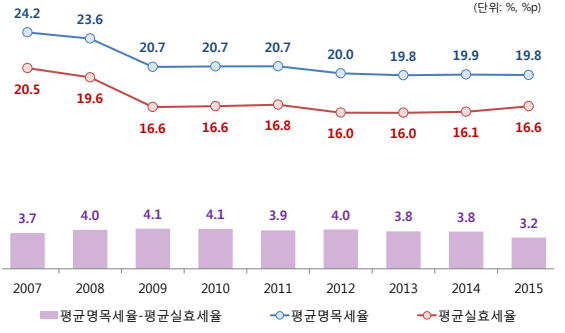

■ (평균 실효세율: 기업규모별) 2015년 기준 대기업 18.0% 상호출자집단 17.1%, 중소기업 12.8%

-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4.4%p('07년) → 5.2%p('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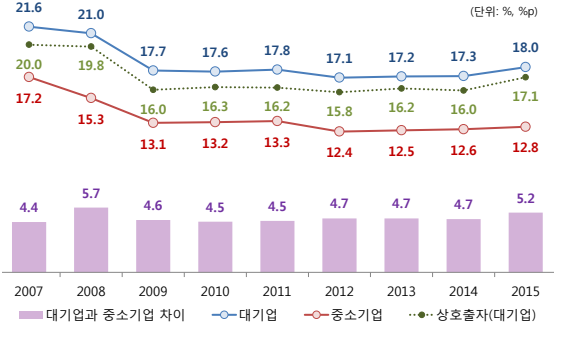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34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 법인세 감면액: 9.2조원('11년) → 6.6조원('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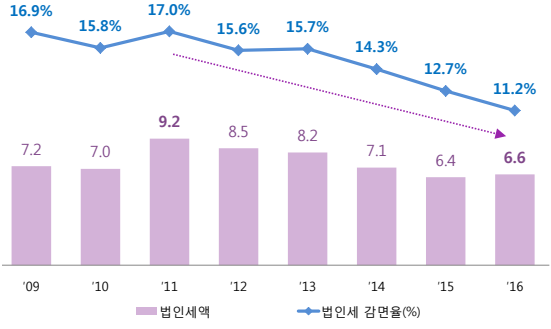

주: 신고연도 기준값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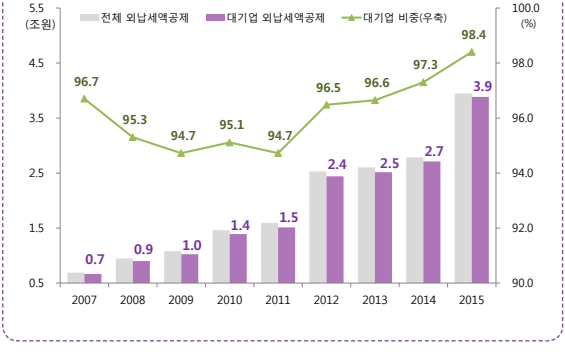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세액공제·세액감면: 지원분야별) 투자촉진, 공익사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감면금액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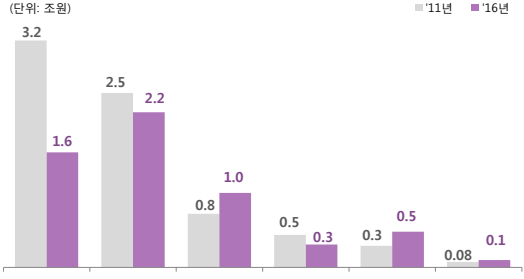

주: 신고연도 기준값임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투자촉진↓ ▶ '임시·고투공제'
  : 26,700억원('11년) → 8,370억원('16년)
- 연구개발↓ ▶ 'R&D비용세액공제'
  : 23,113억원('11년) → 20,316억원('16년)
- 중소기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6,029억원('11년) → 8,670억원('16년)
- 공익사업↓ ▶ '조합법인 과세특례'
  : 3,418억원('11년) → 2,360억원('16년)
- 지역균형↑ ▶ '법인 공장·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 2,001억원('11년) → 3,984억원('16년)
- 고용창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0억원('11년) → 382억원('16년)

■ (주요 세액공제·감면 항목) 2011년 vs. 2015년

(단위: 억원, %)

2011년		법인수	감면액	법인당
임시·고투 공제	전체	9,002	26,690	3.0
	5천억원초과	31	17,134 (64.2)	553
R&D비용 세액공제	전체	13,884	23,113	1.7
	5천억원초과	42	9,241 (40.0)	22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전체	125,046	6,029	0.05
	1백억원초과	126	516 (8.6)	4.1

2015년		법인수	감면액	법인당
임시·고투 공제	전체	5,440	8,732	1.6 [△1.4]
	5천억원초과	19	1,648 (18.9)	87 [△446]
R&D비용 세액공제	전체	22,095	27,630	1.3 [△0.4]
	5천억원초과	28	13,728 (49.7)	490 [+27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전체	159,784	7,592	0.05 [0.0]
	1백억원초과	85	322 (4.2)	3.8 [△0.3]

주: 1) ( )는 해당 항목의 전체 감면액 대비 비중
2) [ ]는 2015년 법인당 평균 감면액의 2011년 대비 증감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5 법인세 미부담 기업

■ 2007년 4.0만개 → 2015년 7.6만개

- 최저한세 적용배제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실적에 따름

(단위: 만개, %)

	전체 기업수	법인세 부담 기업수	법인세 미부담 기업수		
				적자	비과세 · 감면
2007	37.2	21.2	16.0	12.0	4.0 [25.0]
2008	39.8	22.4	17.5	13.0	4.5 [25.7]
2009	41.9	22.8	19.2	14.2	5.0 [26.0]
2010	44.0	23.7	20.3	14.4	6.0 [29.6]
2011	46.1	24.8	21.3	14.9	6.4 [30.0]
2012	48.3	25.8	22.5	16.1	6.4 [28.4]
2013	51.8	27.4	24.4	17.6	6.7 [27.5]
2014	55.0	29.0	26.0	18.7	7.3 [28.1]
2015	59.2	31.3	27.9	20.2	7.6 [27.2]
평균 (전체대비) [미부담대비]	47.0 (100.0)	25.4 (53.9)	21.7 (46.1) [100]	15.7 (33.3) [72.4]	6.0 (12.7) [2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36 국제비교: 법인세 과표구간수

■ OECD 과표구간수 1~8개

과세 구간수	해당 국가	
1개	26개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2개	4개국	호주[1], 일본[2], 헝가리, 네덜란드
3개	3개국	한국, 벨기에[3], 프랑스[4]
4개	1개국	포르투갈[5]
8개	1개국	미국

주: 특정 소득과 특정 산업(이스라엘,영국), 특정 도시(룩셈부르크), 손실기업(이탈리아) 등 차등 세율은 단일세율로 분류

1) 호주: 기본세율 30%, 소기업에 대해 28.5%

2) 일본: 기본세율은 23.4%, 과세소득 800만엔 이하 중소기업 15%

3) 벨기에: 기본세율 33%(부가세 3%~ 추가), 과세소득 322,500유로 까지 구간별 24.25%/31%/34.5% 누진세율

4) 프랑스: 기본세율 33.33%, 소득 38,120유로까지 15%, 75,000유로까지 28%, 단, 76.3만유로 초과시 3.3% 부가세인 사회보험료 과세

5) 포르투갈: 기본세율 21%, 부가세로 과세소득 150만유로/750만유로/3,500만유로 기준, 0%/3%,/5%/7%씩 추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37 국제비교: 법인세 최고세율

■ (중앙정부 기준) 2017년 우리나라 최고세율 22%는 OECD 국가 중 16위 수준

- 2017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2.0%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35	35	35	35	35
프랑스	33.33	33.33	33.33	33.33	33.33
이탈리아	33	27.5	27.5	27.5	27.5
일본	30	30	30	30	30
한국	25	25	22	22	22
영국	30	28	28	28	26
캐나다	21	19.5	19.5	18	16.5
독일	25	15	15	15	15
주요국 평균	29.6	26.9	26.9	26.7	26.2
OECD평균	24.6	23.6	23.4	23.4	23.3

주: ( )는 OECD 35개국 중 순위로, 2017년 기준값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5.0%('07년) → 22.0%('17년)
-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4.6%('07년) → 22.0%('17년)
- 주요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9.6%('07년) → 23.5%('17년)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5	35	35	35	35	35.0	(1)
33.33	33.33	33.33	33.33	33.33	33.33	(2)
27.5	27.5	27.5	27.5	27.5	24.0	(12)
30	25.5	25.5	23.9	23.4	23.4	(15)
22	22	22	22	22	22.0	(16)
24	23	21	20	20	19.0	(25)
15	15	15	15	15	15.0	(30)
15	15	15	15	15	15.0	(30)
25.7	24.9	24.6	24.2	24.2	23.5	
23.2	23.3	23.1	22.8	22.7	22.0	

■ (지방세[2]) 등 포함 기준) 2017년 우리나라 최고세율 24.2%는 OECD국가중 18위 수준

- 2017년 OECD 평균 최고세율은 24.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미국	39.3	39.3	39.2	39.2	39.2	39.1
프랑스	34.4	34.4	34.4	34.4	34.4	36.1
독일	38.9	30.2	30.2	30.2	30.2	30.2
일본	39.5	39.5	39.5	39.5	39.5	39.5
이탈리아	37.3	31.4	31.4	31.4	31.4	31.4
캐나다	34.0	31.4	30.9	29.4	27.7	26.1
한국	27.5	27.5	24.2	24.2	24.2	24.2
영국	30.0	28.0	28.0	28.0	26.0	24.0
주요국 평균	36.2	33.5	33.4	33.2	32.6	32.3
OECD평균	26.8	25.8	25.5	25.5	25.3	25.3

주: 1) ( )는 OECD 35개국 중 순위로, 2017년 기준값임
2) 파란색은 순위가 낮아졌음을, 빨간색은 높아졌음을 표시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하는 지방세와 법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포함

-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7.5%('07년) → 24.2%('17년)
-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6.8%('07년) → 24.2%('17년)
- 주요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36.2%('07년) → 29.6%('17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순위		
					'07	'17	변동
39.1	39.1	39.0	38.9	38.9	(2)	(1)	(1↑)
36.1	38.0	38.0	38.0	34.43	(5)	(2)	(3↑)
30.2	30.2	30.2	30.2	30.2	(3)	(4)	(1↓)
37.0	37.0	32.1	30.0	30.0	(1)	(7)	(6↓)
31.4	31.4	31.3	31.3	27.8	(4)	(11)	(7↓)
26.3	26.3	26.3	26.8	26.7	(7)	(13)	(6↓)
24.2	24.2	24.2	24.2	24.2	(17)	(18)	(1↓)
23.0	21.0	20.0	20.0	19.0	(11)	(32)	(21↓)
31.9	31.9	31.0	30.7	29.6			
25.3	25.2	24.9	24.8	24.2			

■ (최고세율 변화) 2007년 vs. 2017년

- 세율 인하 21개국
- 세율 인상 7개국, 세율 유지 7개국

▶ 세율 인하 21개국: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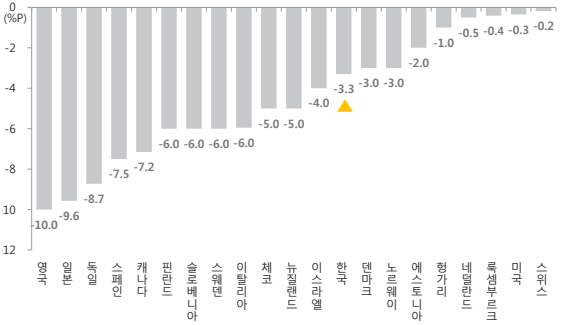

▶ 세율 인상 7개국/ 유지 7개국: 칠레, 프랑스 등/호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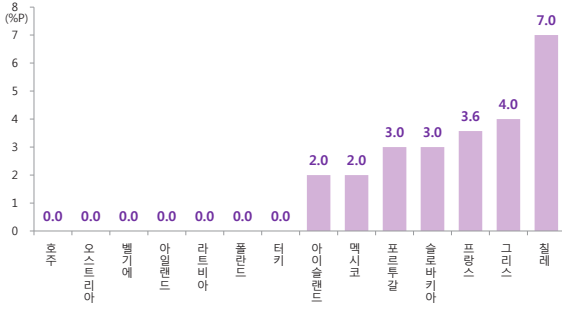

주: 지방세 등을 포함한 최고세율 기준
자료: OECD Tax Database

38 국제비교: 법인세 부담

■ 2014년 기준 명목GDP 대비 법인세 부담 3.2%

- 2014년 OECD 평균 2.8%
- 2010~2012년 상승 후 하락해 2010년 3.2% 수준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일본	3.2	3.4	3.7	4.0	4.1
캐나다	3.2	3.1	3.2	3.3	3.3
한국	3.2	3.7	3.7	3.4	3.2
영국	2.8	2.9	2.7	2.5	2.4
프랑스	2.3	2.6	2.6	2.6	2.3
이탈리아	2.3	2.2	2.4	2.6	2.2
미국	1.8	1.8	2.0	2.1	2.2
독일	1.5	1.7	1.7	1.8	1.7
OECD평균	2.7	2.9	2.9	2.9	2.8

자료: OECD Tax Database

39 법인세 최근 개정 동향

- 2008~2009년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세제지원 확대

- 2011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은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비과세·감면 축소

- 2011년 이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고용 지원 세제 확대

- 2014년 이후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기업소득의 가계소득 환류 유인

■ (최고세율) 법인세율 인하 후 유지, 최저한세율 인하 후 대기업 인상

	2007	2009	2013	2014~
법인세율	25%	22% (-3%p)	22%	22%
최저한세율	15%	14% (-1%p)	16% (+2%p)	17% (+1%p)

■ 법인세 주요 비과세·감면 정비

	R&D 비용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舊임투공제)	기타 투자세액공제
2008	일몰폐지 영구화	-	-
2009	신성장·원천기술 도입, 공제우대	舊 임투공제율 7% → 10%	공제율 인상
2012	증가분 산출기준 단계적 조정	임투공제 고투공제 전환	
2013	대기업 당기분 공제 한도 축소	대기업 기본공제 (고용유지 전제) 공제율 하향조정, 후 폐지	
2014			대기업 중심 공제율 인하
2016	대기업 당기분 공제 한도축소, 증가분 공제율 인하		
감면액 ('16)	20,316억원	8,370억원	7,829억원

■ 고용유인 제고 위한 법인세 세제지원

(단위: 억원)

	제도명	감면액 ('16년)
2008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특례	0.09
2011	• 舊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전환	8,370
	•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2
2012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병역이행후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
	• 근로소득증대세제	157
2013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0.03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2
2014	• 청년고용증대세제	436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등	-

주: 제도의 일몰연장 및 확대 개정내용은 반영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 기업소득 환류: 고용 · 배당 · 임금증가 등 조세유인 제고

-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15년): 2000년 이후 법인의 소득증가율이 개인을 상회하며, 사내유보금 급증

  ※ 투자 · 배당 · 임금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10% 추가 과세

〈국민계정상 '총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

(단위: %)

	'80~'89년	'90~'99년	'00~'09년	'10~'14년
개인	16.8	12.9	5.7	4.9
법인	19.8	12.7	25.2	14.6
전체	17.2	12.8	7.0	5.4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실적: 2015년〉

(단위: 개, 억원)

	과세대상 기업 (A)	기준달성 (초과환류, B)	과세기업 (미환류소득 발생, C)		
				납입 (C1)	과세유예 (C2)
기업수	3,029	2,027	1,002	147	860
(비중)	(100.0%)	(66.8%)	(33.2%)	(4.0%)	(27.2%)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	-	5,755 (100.0%)	469 (8.1%)	5,286 (9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Part 02

국 세

부가가치세

40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

- "전단계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며, 세율은 단일세율로 10%임

- 단, 수출재화 등 영세율 적용, 기초생활필수품 등 면제

매출세액 (A)	과세표준 × 세율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 가감 ——————— = 매출세액
매입세액 (B)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매입세액
납부세액 (A–B)	매출세액 매입세액 ——————— = 납부(환급) 세액 – 공제, 감면세액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가산세액 ——————— =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 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 수입업자

사업자	구 분
과세사업자	수입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의 재화·용역 공급업자
수입자	공급자가 국외거주자로, 재화 수입자가 납세의무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징수

▼

구분		과세 내용
일반 과세자	기준	1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 과세자	기준	1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세율×10%) – 공제세액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41 영세율, 면세

■ 영세율: 재화·용역 공급시 영의 세율(0%) 적용

■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세

구분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납세의무		있음	없음
적용목적		소비지국 과세원칙 수출촉진	부가가치 구성요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기초생필품 등), 조세정책상의 목적
사업자의 협력 의무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법상의 협력의무 이행	납세의무자 아님,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협력의무가 없음
거래 징수	매출	면세: 영의세율로 매입자 거래징수 하지 않음	면세: 과세대상거래 아님
	매입	과세: 환급 또는 매출세액공제	과세: 필요경비 또는 고정 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특징		완전면세	부분면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 면세대상

부가가치세법	
기초 생활 필수품	• 미가공식료품 • 국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여성 위생용품 • 대중여객운송용역(일반고속버스 포함)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국민 후생	• 의료보건용역(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등 제외)과 혈액 • 교육용역
문화	• 도서·신문·잡지·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예술행사·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생산 요소	• 토지 • 금융·보험 용역(보호예수 등 일부 부수용역 제외) • 인적용역
기타	• 우표, 인지, 복권 • 일정한 법 소정의 담배 •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 국민주택 및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
- 시내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 일정한 농·임·어업용 및 연안선박용 석유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42 부가가치세수 현황

■ 부가가치세는 2016년 61.8조원, 국세 대비 25.5%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부가가치세(B)	비중(B/A)
2007	161.5	40.9	25.4
2008	167.3	43.8	26.2
2009	164.5	47.0	28.6
2010	177.7	49.1	27.6
2011	192.4	51.9	27.0
2012	203.0	55.7	27.4
2013	201.9	56.0	27.7
2014	205.5	57.1	27.8
2015	217.9	54.2	24.9
2016	242.6	61.8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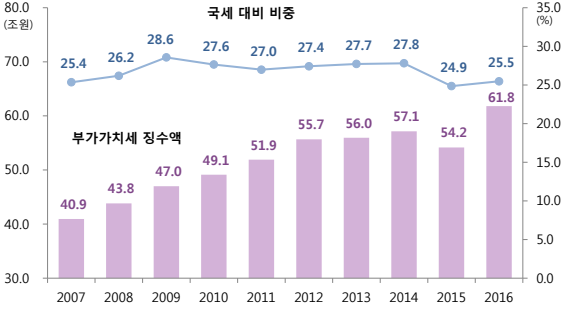

43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 단일세율 국가는 한국, 일본, 덴마크 등 3국, 그 외 대부분은 복수세율 구조

-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부가가치세 시행

표준세율/단일세율 국가	복수세율 국가
덴마크(25.0%) 한국(10.0%) 일본(8.0%)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과세행정·납세순응 용이, 세제의 단순화 조세중립성	부가가치율에 상응하는 세율 적용 차등세율에 따른 역진성 완화

자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44 국제비교: 부가가치세율

■ 2016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는 OECD 회원국[3] 중 30위 수준

- 2016년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 13.7%
- 주요국 중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20%대, 우리나라와 독일 10%대, 일본과 캐나다 각각 8%와 5% 수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탈리아	20.0	20.0	20.0	20.0	20.0	21.0
프랑스	19.6	19.6	19.6	19.6	19.6	19.6
영국	17.5	17.5	15.0	17.5	20.0	20.0
독일	19.0	19.0	19.0	19.0	19.0	19.0
한국	10.0	10.0	10.0	10.0	10.0	10.0
일본[4]	5.0	5.0	5.0	5.0	5.0	5.0
캐나다	6.0	5.0	5.0	5.0	5.0	5.0
미국	–	–	–	–	–	–
주요국 평균	14.5	14.4	13.9	14.4	14.8	14.9
OECD평균	17.8	17.7	17.7	18.0	18.5	18.8

주: 1) ( )는 OECD 34개국 중 순위로, 2016년 기준값임
2) 파란색은 순위가 낮아졌음을, 빨간색은 높아졌음을 표시
자료: OECD Tax Database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가가치세 없이, 주정부에서 판매세(sales tax)를 운영
4) 2019년 10%로 인상 예정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 10.0%('07년) → 10.0%('16년)
- OECD 평균 부가가치세율: 17.8%('07년) → 19.2%('16년)
- 주요국 평균 부가가치세율: 14.5%('07년) → 15.7%('16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순위		
				'07	'16	변동
21.0	22.0	22.0	22.0	(12)	(11)	1↑
19.6	20.0	20.0	20.0	(14)	(19)	5↓
20.0	20.0	20.0	20.0	(23)	(21)	2↑
19.0	19.0	19.0	19.0	(17)	(23)	6↓
10.0	10.0	10.0	10.0	(30)	(30)	-
5.0	8.0	8.0	8.0	(33)	(31)	2↑
5.0	5.0	5.0	5.0	(32)	(33)	1↓
-	-	-	-	-	-	-
14.9	15.7	15.7	15.7			
19.0	19.1	19.2	19.2			

■ (세율 변화) 2007년 vs. 2016년

- 세율 인상 22개국[5)]
- 세율 유지 10개국[6)] 및 세율 인하 2개국

▶ 세율 인상 22개국: 헝가리, 일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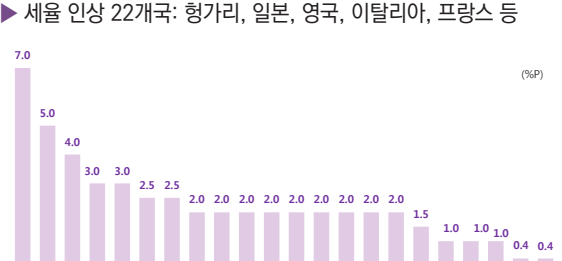

▶ 세율 유지 10개국/세율 인하 2개국: 독일, 한국 등/ 캐나다, 아이슬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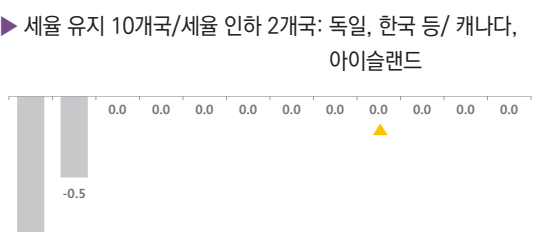

자료: OECD Tax Database

---

5) 사회보장 관련 재정 악화 해소 및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5%→8%, '14.4.), 향후 10%로 인상 예정('19.10)

6) 독일은 2006년 세법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을 2007년부터 3%p 인상하여 적용('06년 16%→'17년 19%)

45 국제비교: 면세 대상

■ OECD vs. EU vs. 한국

- OECD 국가들은 비영리교육과 국민후생용역 성격이 있는 의료서비스만 면세, 금융 중개수수료, 환전용역 등 과세

구 분		OECD	EU	한국
기초 생필품	미가공식료품	과세	저율과세	면세
	가공식료품	과세	저율과세	과세
	수도	과세	저율과세	면세
	연탄 및 무연탄	과세	과세	면세
	여객운송	과세	저율과세	면세(일부과세)
	주택임대	면세	면세	면세
국민후생 문화관련	건강증진 의료	면세	면세	면세
	미용 목적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교육	면세	면세	면세
	영리교육	과세	과세	면세
	도서 및 신문	과세	저율과세	면세
	방송	과세	면세	면세
	예술창작품	과세	과세	면세
	도서관	면세	면세	면세
부가가치 생산요소	토지	면세	면세	면세
	금융 및 보험	면세	면세	면세(일부과세)
	인적용역	과세	과세	면세(일부과세)
기 타	우표	면세	면세	면세
	담배	과세	과세	과세(일부면세)
	공익단체	면세	면세	면세
	정부	과세	과세	면세(일부과세)

46 국제비교: 경감세율

■ OECD 국가 현황

(단위: 조원, %)

국가	표준/단일세율	경감세율	특정지역 세율
오스트리아	20.0	10.0/13.0	19.00
벨기에	21.0	0.0/6.0/12.0	-
캐나다	5.0	0.0	13.0/14.0/15.0
체코	21.0	10.0/15.0	-
덴마크	25.0	0.0	-
핀란드	24.0	0.0/10.0/14.0	-
프랑스	20.0	2.1/5.5/10.0	0.9/2.1/10.0/13.0& 1.05/1.75/2.1/8.5
독일	19.0	7.0	-
그리스	23.0	6.0/13.0	4.0/ 9.0/16.0
헝가리	27.0	5.0/18.0	-
아이슬란드	24.0	0.0/11.0	-
아일랜드	23.0	0.0/4.8/9.0/13.5	-
이탈리아	22.0	4.0/5.0/10.0	-
일본	8.0	-	-
한국	10.0	0	-
영국	20.0	0.0/5.0	-

47 국제비교: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

■ 세법지식 · 계산능력 · 장부 기장능력 · 신고서 작성능력 등 납세순응력 부족을 감안

국가	내 용
영국	• (VAT 소매제도) 연간 소매매출액 1억파운드 이하 소매업자, 매입액에서 매출 관련 세액 추계를 인정 • (평균세율과세제도) 다음해 연간과세매출 예상액 15만파운드 이하 또는 총사업수입187,500파운드 이하 사업자, 총매출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세액 산출
독일	• (과세평균율제도) 과거 매출액 61,356유로를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 과년도 매출액 매출세액에 과세평균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액 산출
일본	• (간이과세제도) 기준기간에 과세매출액 5,000만엔 이하 사업자, 간이과세제도 선택 가능
한국	• (간이과세제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48 국제비교: 부가가치세 부담

■ 2014년 기준 명목GDP 대비 부가가치세부담 4.2%

- 2014년 OECD 평균 6.7%
- 부가가치세 부담 소폭 상승: 4.1%('10년) → 4.2%('14년)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독일	7.0	7.0	7.0	7.0	7.0
프랑스	6.8	6.8	6.8	6.8	6.9
영국	6.1	6.8	6.8	6.8	6.8
캐나다	4.2	4.2	4.2	4.1	4.2
한국	4.1	4.1	4.3	4.1	4.2
일본	2.6	2.7	2.7	2.8	3.9
미국	–	–	–	–	–
OECD 평균	6.4	6.5	6.6	6.6	6.7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6」

49 부가가치세 최근 개정 동향

■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전환 및 면세 신설

구분	내 용
과세 전환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일정한 수익사업('07년) •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10년) • 치료 이외의 미용 성형 등의 의료용역('13년) • 대형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와 청소용역('14년) • 은행업 중 보호예수, 보험업 중 보험계리용역('14년) • 안면윤곽술 등 미용성형수술('14년)
영세율 신설 등	•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방송수신기('11년)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연장
면세 신설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바우처 방식 복지서비스('08년)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관련 설계용역('08년) • 노인복지주택 공급 일반 관리·경비용역 및 청소용역('10년) • 목재펠릿('10년) •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수급자 사육동물 진료영역('11년) • 친환경 전기버스('11년) • 사회적기업의 간병, 산후조리, 보육 및 교육용역('12년) • 일반 고속버스('14년) • 연극 및 무용,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15년) • 액상형 분유, 어작업 대행용역 면제 확대('16년)

주: ( )는 도입연도 기준임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

※ 면세재화 매입시 세금계산서 없이도 일정 금액을 의제하여 공제

개정연도	면세농산물 등
’05. 3	일반 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6년말까지 면세농산물 5/105
’07. 4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특례) ’08년말까지 면세농산물 6/106
’10. 3	일반업종 2/102 음식업 (원칙) 3/103, 과세유흥장소 4/104 (특례) ’10년말까지 농산물 법인 6/106, 개인 8/108
’12. 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 4/104
’13. 2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 6/106. 개인 8/108. 과세유흥장소·제조업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정연도	**재활용폐자원**
’06.12	6/106 중고품10/110
’10. 1	106분의 6 중고자동차: ’10.1.1. ~ ’10.12.31. 10/110 ’11.1.1. ~ ’13.12.31. 9/109
’14. 1	재활용품: ’14.1.1. ~ ’15.12.31. 5/105 ’16.1.1. ~ ’16.12.31. 3/103 중고자동차: ’14.1.1. ~ ’14.12.31. 9/109
’14.12	중고자동차 : ‘16.12.31. 9/109
’13. 2	재활용품: ’17.1.1. ~ ’18.12.31. 3/103 중고자동차: ’17. 1. 1. ~ ’18. 12. 31. 9/109

■ 매입자납부특례

- 납세의무자(매출자)의 세금포탈* 방지 목적
- 2008년 금지금 거래에 대한 제도 도입 후 확대

  * 금도매업자에 대한 탈루 추징 규모('03~'05년 상반기): 8,422억원

2008	2009	2014	2015	2016
금지금	고금	구리스크랩	금스크랩	철스크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배분

- 2010년 부동산 경기불황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의 5%) 도입
- 2013년 부동산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5%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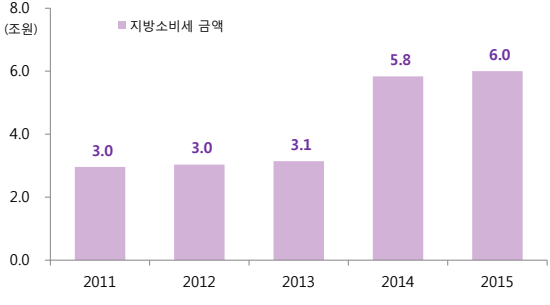

Part 02

국 세

상속 · 증여세

50 상속세 과세체계 및 공제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는 동일하나,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가 상이하여 결정세액은 다름

상속세

■ '유산세' 방식: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

■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등), 추정 상속재산(상속전 1년내 2억원, 2년내 5억원 이상, 처분 시 가산)

■ 세율: 10~50% 누진세율, 세대생략시 30% 할증과세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세율	10%	20%	30%	40%	50%

■ 비과세 및 공과금 등 공제

- 비과세: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 유증시, 분묘 금양임야 · 묘토, 족보, 제구 등
- 공제: 공과금, 장례비용(5백만원~1천만원), 국가 · 지자체 · 금융기관 등 채무

■ 상속공제

구 분	항 목	공제내용	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 상속가액	30억 (최소 5억)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19세까지 잔여 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자공제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원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200~500억원 한도	가업영위 기간별 차등적용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15억원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부채) × 20%		2억원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멸실훼손시 손실가액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시 주택가액 80% 공제	5억원

■ 세액공제

- 기납부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1년내 100%, 매 1년마다 10%씩 체감)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7%)

51 증여세 과세체계 및 공제

증여세

■ ‘유산취득세’ 방식: 수증인의 실제 취득 재산에 과세

■ 과세대상: 거주자의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의 국내 모든 증여재산 및 국외예적금

- 유 · 무형, 법률적 · 사실적, 직 · 간접을 불문한 경제적 가치의 무상 이전, 배우자 등 양도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명의 신탁 재산, 일감몰아주기 등)
-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 세율: 10~50% 누진세율 적용, 상속세와 동일

과세표준	1억원	1~5억원	5~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세율	10%	20%	30%	40%	50%

■ 비과세

- 국가 · 지자체로부터의 증여재산, 부양의무자 간 생활 · 교육비 등

■ 증여재산 공제

- 친족공제: 배우자(6억원 한도), 직계존속(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6촌(4촌) 이내 혈족(친족) (1천만원)
- 재해손실공제

52 상속·증여세수 현황

■ 상속·증여세는 2016년 5.4조원, 국세대비 2.2%

(단위: 조원, %)

연도	국세(A)	상속·증여세(B)	비중(B/A)
2007	161.5	2.8	1.8
2008	167.3	2.8	1.7
2009	164.5	2.4	1.5
2010	177.7	3.1	1.7
2011	192.4	3.3	1.7
2012	203.0	4.0	2.0
2013	201.9	4.3	2.1
2014	205.5	4.6	2.3
2015	217.9	5.0	2.3
2016	242.6	5.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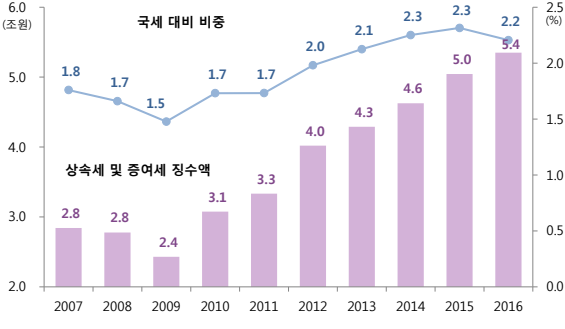

53 상속 · 증여세 평균 실효세율

■ 상속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 2007~2013년 동안 38.5%에서 34.2%로 4.3%p 하락
-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5년 36.1%

(단위: %)

’07	’08	’09	’10	’11	’12	’13	’14	’15
38.5	35.9	36.9	34.7	35.7	36.1	34.2	34.6	36.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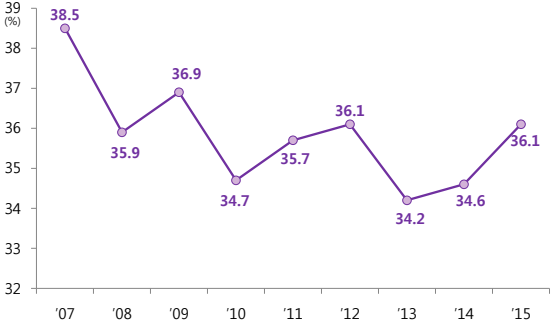

■ 증여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

- 2011년 이후 상승세
- 2007년 25.3%에서 2015년 31.6%로 6.3%p 상승

(단위: %)

’07	’08	’09	’10	’11	’12	’13	’14	’15
25.3	28.5	24.6	27.7	24.9	26.0	27.2	29.8	3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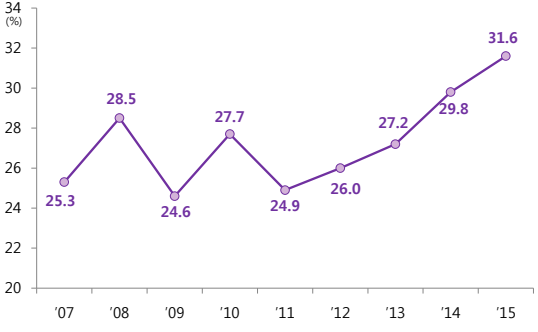

54 국제비교: 상속 · 증여세제

■ (상속세제) OECD 주요국 동향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미국	○	18~40% (12단계 누진 세율)	2001	감세법안 가결 ('02~'09년 비과세 확대, 최고 세율 체감, '10년 유산세 폐지)
			2010	유산세 일시 정지
			2011	유산세 부활
			2013	최고세율 인상, 생존 배우자가 사망배우자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는 조치 항구화
영국	○	40%	2007	생존 배우자가 사망 배우자가 남긴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게 함
			2010	비과세 물가연동 동결
프랑스	○	직계: 5~45% (7단계 누진 세율) 형제: 5~45% (2단계 누진 세율) 4촌이내 친족: 55% 기타: 60%	2006	생애증여의 누적기간 축소 (10년→6년)
			2007	배우자 등 과세 면제, 공제액 인상(직계, 형제)
			2012	세율인상(직계), 생애증여 누적기간 연장(6년→10년), 공제액 인하(직계)
			2013	공제액과 세율 등의 물가연동 폐지
			2014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말 이전 토지 증여 및 2016년말 이전 신규주택의 자녀 및 증손자녀 증여 거래 특별공제

국가	상속세 유무	세율	최근 주요 개정	
일본	○	10~55% (8단계 누진 세율)	2003	최고세율 인하,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도입
			2008	가업승계 납세유예제도 시행
			2013	최고세율 인상, 기초공제 인하
이탈리아	○	배우자, 직계 : 4% 형제, 기타 친족: 6% 기타: 8%	2001	상속세 폐지
			2006	상속세 재도입(유산취득세 방식), 단일세율
			2007	형제를 배우자, 직계 범위로 구분하여 기타 친족 세율 적용
독일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 7~30% (7단계 누진 세율)	2008	공제액인상, 세율적용 금액 인상, 세율 인상 (2구간 및 3구간)
		형제, 양자녀, 양부모 등 : 15~43% (7단계 누진 세율)		
		기타 : 30~50% (2단계 누진)	2010	세율 인하(2구간)
			2016	가업상속세제 사업용 자산 요건 강화
캐나다	×	-	1972	상속세 폐지, 사망시 양도소득과세의 도입

55 국제비교: 상속 · 증여세 부담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 비중 0.3% 수준

- 2014년 OECD 평균 0.12% 대비 0.2%p 가량 높음

(단위: %)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독일	미국	OECD 평균
0.477	0.385	0.311	0.213	0.186	0.137	0.122

주: 증여세가 포함된 수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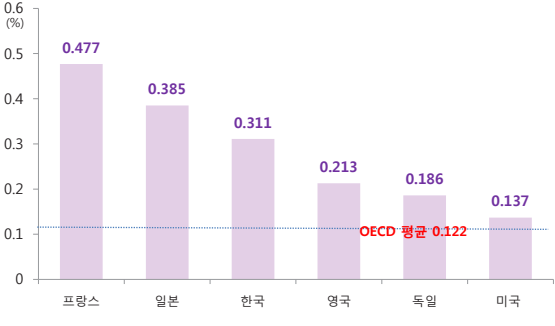

56 상속 · 증여세 최근 개정 동향

■ 최근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와 가업승계세제 확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정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부의 변칙적 증여 방지를 위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11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도입('15년)

2011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도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신설
2012	• 제도 합리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선정 보완, 지배주주 100% 출자법인과의 거래 과세 제외 등 • 과세 강화: 정상거래비율(30%) 공제 → 정상거래비율의 1/2(15%)만 공제
2013	• 중소·중견기업 과세완화: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 비율 차등(일반/중소·중견, 각각 30%/50%, 3%/10%)
2014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신설: 지배주주 주식보유 비율 기준 30%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 가업승계세제 확대

- 2007년 이후 매년 대상요건 완화 및 공제금액 인상 등이 이루어짐

2008	• 가업상속 요건 완화: 중소기업 공제비율 및 한도 상향 조정(20% → 40%, 30억원 → 60~100억원), 사업영위기간 완화(15년 → 10년)
2009	• 중소기업 적용 요건 완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가업영위기간의 80%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60% 이상,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2011	• 공제 확대: 공제율 40% → 70%, 공제한도 피상속인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60~100억원 → 100~300억원
2012	• 공제 대상 확대: 공제대상 제외기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 2,000억원 초과
2013	• 제도 개선: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완화(중소·중견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공제금액 및 한도 확대(가업상속재산의 70% → 100%, 한도 경영 10년/15년/20년 이상, 100억원/150억원/300억원 → 200억원/300억원/500억원)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기한 폐지
2014	• 가업 조기승계 지원: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및 요건 합리화(한도 30억원 → 100억원, 5억원 공제 후 10% 저율과세 → 과표 30억원 초과분 20%)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각 연도

Part 02

국 세

기타 세목

57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보유 조세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위해 2005년 도입
-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인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구 분		과표	세율	누진공제
주택		6억이하	0.50%	-
		12억이하	0.75%	150만원
		50억이하	1%	450만원
		94억이하	1.50%	2,950만원
		94억초과	2%	7,650만원
토지	종합합산	과표	세율	누진공제
		15억이하	0.75%	-
		45억이하	1.50%	1,125만원
		45억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	과표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이하	0.50%	-
		400억원이하	0.60%	2,000만원
		400억원초과	0.70%	6,000만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구 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	과세	과세
		• 별장	과세	×
		•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등	과세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농지·임야 등	과세	과세
		• 분리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과세	과세
		•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기준초과토지	과세	과세
		•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	과세
	별도합산	• 건물 부속토지	과세	과세
		• 인·허가 받은 사업용토지	과세	과세
	분리과세	• 농지·임야 등	과세	×
		• 공장용지, 공급목적 토지	과세	×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1.3조원, 국세 대비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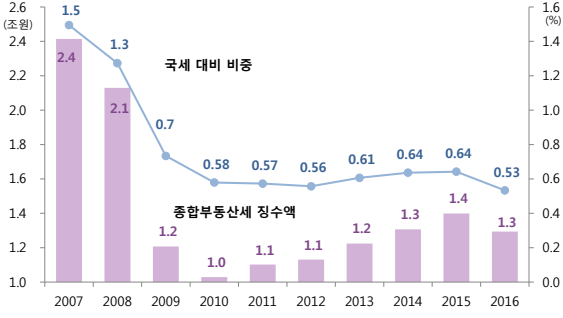

58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 또는 특정 장소의 입장 및 유흥음식 행위 등을 담세력으로 보아 이에 부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 보석·귀금속, 시계, 모피 : 기준가격 • 석유류 : 반출수량 • 그 외 : 반출가격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요금
과세영업장소	과세영업장소 경영자	총매출액

■ 세율

과세 물품	• 투전기, 오락용품 등 20% • 로얄제리 7%, 자동차와 에너지 다소비 품목 5% • 보석 · 귀금속 · 모피 · 가방 · 시계 · 담배 등 20%
	• 휘발유475원/ℓ(529원/ℓ), 경유340원/ℓ(375원/ℓ) • 발전용유연탄30원/㎏(27~33원/㎏) • 천연가스60원/㎏(42원/㎏)등
과세 장소	• 입장행위 경마장 2,000원 • 경륜 · 경정장 1,000원 • 골프장 12,000원, 카지노 50,000원 등
	• 유흥주점등 음식요금의 10% • 카지노 매출액 500억원/1,000억원 기준 0/2/4%

주: ( )는 탄력세율이 적용된 값임

■ 최근 주요 개정 동향

'12년	• 고급가방에 대해 출고·수입가격 중 200만원 초과분에 개별소비세 20% 과세 신설
'13년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신설(24원/kg)
'14년	•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594원/궐련 20개비)
'15년	• 녹용, 방향용 화장품, 고급사진기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 시 개별소비세 인상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16년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인상(24원→30원/kg) • 로열젤리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400만원/대)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

■ 개별소비세는 2016년 8.9조원, 국세 대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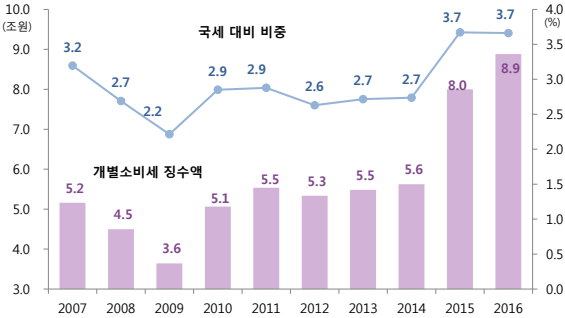

59 주세

■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하여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 또는 가격에 대해 부과

주 종		세 율
주 정		57,000원/㎘ (알코올 1%초과마다 600원 가산)
발효주	탁주	5%
	약주	30%
	청주	30%
	맥주	72%
	과실주	30%
증류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72%	

■ 주세는 2016년 3.2조원, 국세 대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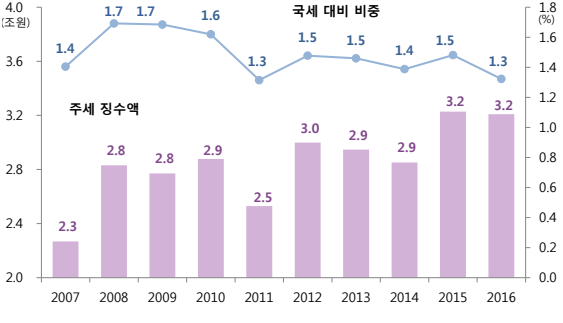

60 인지세

■ 재산에 관한 권리 등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시 과세기준 초과자에 대해 부과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금융·보험 기관과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등 4.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 5.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기재금액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기재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기재금액 10억원 초과: 35만원
6.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 1만원: 50원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권면금액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400원
	권면금액 10만원 초과: 800원
7.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400원
8. 예·적금에 관한 증서, 통장 등	100원

■ 인지세는 2016년 0.9조원, 국세 대비 0.4%

61 증권거래세

■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매매결제되거나 금융투자업자 및 양도자에 의해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해 과세

-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한 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함

■ 세율

- 법정세율: 거래금액(비상장주식 등)의 0.5%
- 탄력세율: 유가증권시장 0.15%(농특세율 0.15%), 코스닥 및 코넥스 0.3%

■ 비과세

- 국가 · 지자체의 양도, 자본시장법(제119조)에 따른 주권매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 등

■ 증권거래세는 2016년 4.5조원, 국세 대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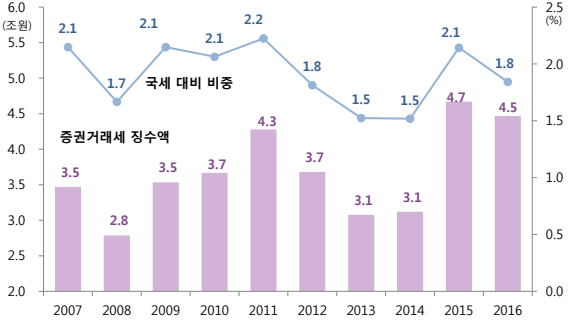

6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재원확보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10년 한시 '교통세'로 신설,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해 2018년까지 연장

■ 세율

- 휘발유 및 대체유류 : 475원/ℓ
- 경유 및 대체유류 : 340원/ℓ
-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며,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임

■ 면세

- 수출 및 우리나라 주둔 외국군대 납품, 외교관 등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는 2016년 15.3조원, 국세 대비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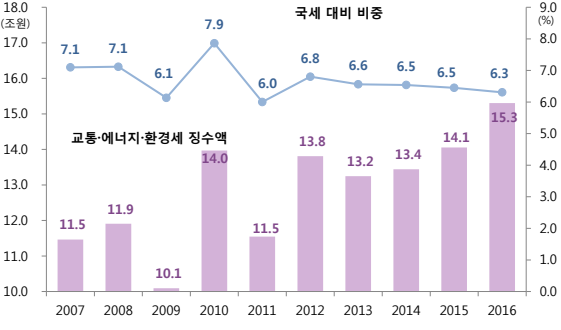

63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및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납세의무자에 대해,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 세율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수송용부탄은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이상, 30%)

■ 비과세

-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금액

■ 교육세는 2016년 4.9조원, 국세 대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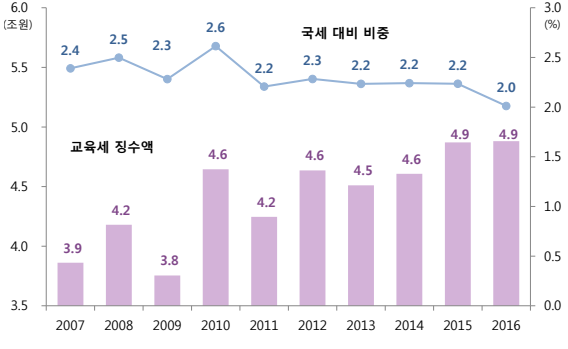

64 농어촌특별세

■ UR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세로서 1994년 7월 도입, 2024년 6월까지 30년간 적용

- 조세감면액, 취득세액 등에 부과되는 부가세(surtax)

과세표준	세율	부과 대상
조세감면액	20%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감면액
	10%	세금우대종합저축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1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물품
개별소비세액	30%	골프장 입장
증권거래금액	0.15%	상장주식
취득세액 *표준세율 2% 적용	10%	부동산 등 취득자 *서민 · 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 등 제외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 농특세는 2016년 3.6조원, 국세 대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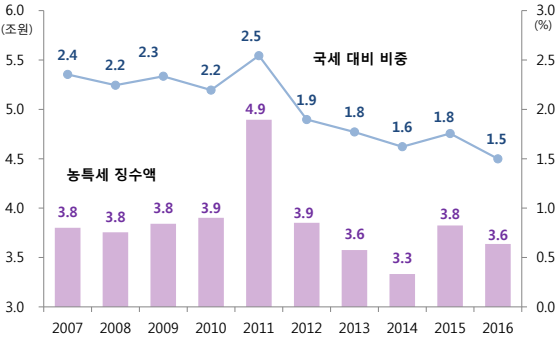

65 관세

■ 수출·입에 따라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우리나라는 수입관세만 부과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

▶ 과세표준: 수입물품의 가격인 '과세가격'※ 또는 '수량'

※ 당해물품 거래가격, 동종 동질 물품 거래가격 등에 기초한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를 통해 결정

▶ 관세율: 우리나라 관세법상의 '국정세율'(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등),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WTO 양허세율, FTA 협정세율 등)*

※ 단, 관세법상의 적용순위에 따름

■ 관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총 22개로, 산업지원 목적이 11개, 국제협정 및 관례에 따른 11개 등

- 외교관물품등 정부용품 등, 재수출·재수입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 면세
- 외국인투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등 감면

■ 관세는 2016년 8.0조원, 국세 대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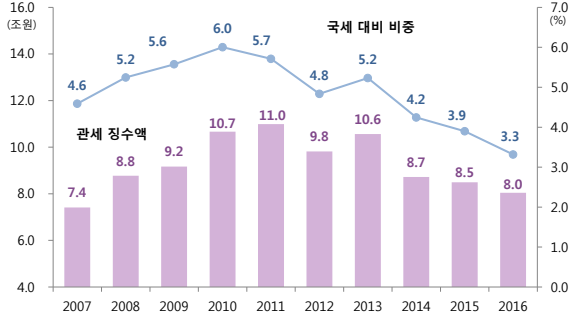

Part 03

조세특례

운영 현황

66 전체 현황

■ 국세감면액 2016년 37.4조원, 2017년 38.7조원 전망

- 국세감면율: 2016년 13.4%, 2017년 13.3% 하락할 전망
- 명목GDP 대비 국세감면 비중: 2015년 2.30%, 2016년 2.23%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100
GDP대비 조세감면 비중(%)=(국세감면액/명목GD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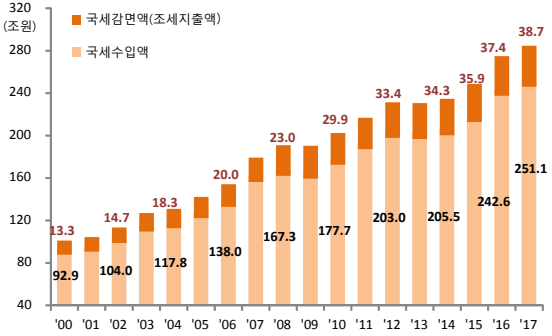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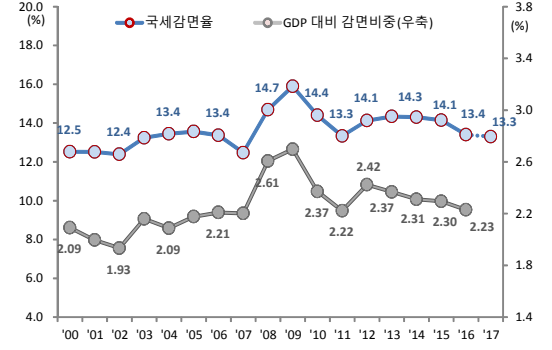

67 세목별 조세특례

■ 세목별 조세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서임

- 세목별 평균 감면율※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순임

※ {세목별 감면액/(세목별 조세수입액+세목별 감면액)}×100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합계
조세수입액(A)	68.5	52.1	61.8	60.2	242.6
조세감면액(B)	20.6	6.6	8.1	2.2	37.4
조세감면 비중 [= B/A]	30.1	12.7	13.1	3.7	15.4
평균 감면율 [= B/(A+B)]	23.1	11.2	11.6	3.5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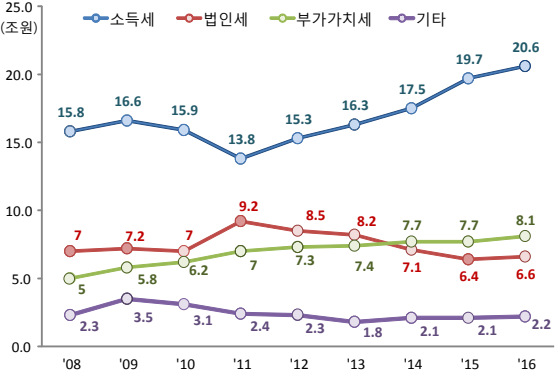

68 예산분류별 조세특례

■ 예산분류 기준으로 2017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이 높음

- 동 4개 분야의 조세지출 합계액이 30.2조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액 38.7조원 대비 95.8%임

예산분류	감면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2.4	(6.2)
공공질서및안전	-	(-)
외교·통일	0.0	(0.0)
국방	0.6	(1.6)
교육	1.4	(3.5)
문화및관광	0.0	(0.0)
환경	0.7	(1.8)
사회복지	10.1	(26.2)
보건	5.2	(13.3)
농림수산	4.9	(12.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1.4	(29.4)
교통및물류	0.5	(1.4)
통신	-	(-)
국토및지역개발	1.5	(3.9)
과학기술	0.0	(0.0)
예비비	-	(-)
합계	38.7	(1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4대 주요 조세지출 분야의 조세지출 항목 사례

항목	내 용
사회복지 (10.1조원)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1조 7,683억원) • 자녀세액공제(1조 3,085억원) • 근로장려금(1조 529원) • 연금계좌세액공제(1조 168억원) • 개인기부금세액공제(8,546억원) • 자녀장려금 지급(5,694억원)
보건 (5.2조원)	• 국민건강보험료 소득공제(2조 5,978억원) • 의료비 세액공제(9,419억원) •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1조 1,611억원)
농림수산 (4.9조원)	•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조 4,897억원) • 농·임·어업용 면세유 (1조 1,086억원)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조 2,045억원) •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5,673억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1.4조원)	•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4,094억원) • R&D비용 세액공제(2조 945억원)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조 8,643억원)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조 5,776억원)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8,544억원)

주: ( )의 감면금액은 2017년 전망치임
자료: 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69 조세특례평가제도

■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가 예산안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 2012년 성과관리 도입 후 2015년부터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시행, 평가결과를 행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토록 함

- 소관부처의 조세지출 자율평가 결과는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에 제출
- 2015년부터 조세특례 평가제도를 시행, 매해 외부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된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

※ 연간 국세감면액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여, 신규 도입안 사전평가('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와 일몰도래 조세특례에 대한 사후평가('조세특례 심층평가')로 이루어짐

■ 2017년 조세특례평가: 총 10건(신규안 2건, 일몰도래 8건)

(단위: 억원)

신규 조세특례 도입안 평가(2건)			
1.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826	25% 세액공제	미도입
2. 국가 고속철도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321	영세율 적용	
일몰도래 조세특례 평가(8건)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7,828	소득세, 법인세 5~30%	축소 연장
2.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15,070	비료·농약·사료 등	단순 연장
3.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8,752	고용연계 투자금액, 기본(고용유지) 0~3%, 추가(고용추가) 3~6%	통합 설계
4. 공장,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법인세 감면	4,038	소득세,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확대 연장
5. 수도권 과밀억제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481	소득세, 법인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등	단순 연장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 세액공제	2,966	생산성향상시설 관련 투자금액, 대/중견/중소기업 3%/5%/7%	축소 연장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2,157	당기순이익 20억원 기준, 9%/12% 저율세율	축소 연장
8. 청년고용 증대세제	481	청년 정규직 증가 인원당 200만원(중견·중소 500만원) 세액공제	통합 설계

주: 감면액은 정부 발표 자료인용

자료: 정부, 「2018년도 성과평가 추진」(2017.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70 조세지출 관리규정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국가재정법 제88조)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 국세감면율(%)= {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국세감면액)}×100

최저한세 및 감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32조의2, 제133조)

- 법인세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①)
  :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100~1,000억원 이하/1,000억원 초과 구간별로, 10%/ 12%/ 17% 적용
  * 단, 중소기업 7%

-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조특법 제132조②)
  :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초과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액은 산출세액의 35%/45% 적용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2조의2)
  : 소득세의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 중 2,500만원 초과분 배제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
  :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1억원, 증여세 직전 5년간 통산 1억원 한도

조세특례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투자자산 세액공제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R&D설비투자세액공제(제1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2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 감면제도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④)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 중소기업 감면(제63조) 등 감면제도 대상

기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30조, 제136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조특법 제128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법 제130조)
-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조특법 제136조)

Part 03

조세특례

일몰도래 조세특례

71 2017년 일몰도래 조세특례

(단위: 억원)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감면액 ('16년 실적)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18,643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① 5,6	14,897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8,544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4,873
5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63의2	3,984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72	2,360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3	775
8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법 §29의5	558
9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21의23	415
1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27	347
11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5	305
1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조특법 §71, 조특령 §68	304
13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174
14	근로소득 증대세제	조특법 §29의4	158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감면액 ('16년 실적)
1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조특법 §16①, 조특령 §14	134
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조특법 §87의2	124
17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특법 §107의3	118
1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69의2	68
19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법 §77의3	58
20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117①	47
21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	42
2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09 ④	35
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조특법 §13	27
2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 지원	조특법 §30의2	15
25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 ①9의2	15
26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 지원	조특법 §126의7	3.23
27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 경감	조특법 §118①	3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감면액 ('16년 실적)
28	국가 양도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85의10	3
2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8	1.02
30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1	1
3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법인세 과세 특례	조특법 §60	1
3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특법 §97의5	0.22
3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4	0.15
3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 공제	조특법 §29의3	0.06
35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9의2	0.02
36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	0
3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조특법 §91의15	0
38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조특법 §91의17	0
39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조특법 §97의6	0
4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4	0

순서	제도명	근거법령	감면액 ('16년 실적)
41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조특법 §104의26	0
42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관세법 §95①	0
43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조세특례	조특법 §121의25⑦⑧	0
44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9의3	추정곤란
45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1	추정곤란
46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법 §101	추정곤란
47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 4의2, 4의3	추정곤란
48	임산물 중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2	추정곤란
49	문화접대비손금산입	조특법 §136③	추정곤란
5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7의4	-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신설일자		1992.12. 8.		일몰기한	2017.12.31. (자동차대여업 2019.12.31.)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경영지원			
지원내용	현행	• 감면 대상업종(46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30% 감면 – 단, 10년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는 적용감면률에 10% 추가공제 적용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3년 연장(2020.12.31.) 및 1억원 한도 신설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2,793	11,978	10,953	12,829	12,640
	2014	2015	2016	2017e	2018e
	13,812	16,090	18,643	20,666	22,164
주요 개정연혁	• 1992년 신설 당시 제조업만 적용가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업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2] 농 · 어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특법 §105①5,6)

신설일자		1989.12.20.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소득증대			
지원내용	현행	• 특정 농 · 축산 · 임업 ·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비료 · 농약 · 사료, 농업 및 축산 기계 등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5,814	14,117	13,265	13,442	13,155
	2014	2015	2016	2017e	2018e
	15,717	14,514	14,897	15,017	15,139
주요 개정연혁	• 농업을 시작으로 임업, 축산 등으로 대상 확대 – ('93)임업 ('95)축산 ('05)친환경농업용 기자재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신설일자		1968.12.17.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제고			
지원내용	현행	• 투자액에 대해 고용유지시 0~3% 기본공제 적용, 고용창출시 3~11%의 추가공제 적용			
	개정안	• (정부안)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 재설계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032	17,700	27,371	21,243	17,728
	2014	2015	2016	2017e	2018e
	11,349	8,954	8,544	5,983	4,629
주요 개정연혁	•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로 도입한 이후 2011년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 – 대기업 기본공제율 인하 : ('13)3%, ('14)2%, ('15)폐지 – 2017년 공제율 인상 : 중견 1%p, 중소 2%p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4)

신설일자		1981.12.3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생산성·첨단산업과 관련된 시설투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고		
지원내용	현행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중견 5%, 중소기업 7%)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 기술설비 등		
	개정안	• (의원안) 단순 일몰연장, 일몰연장 및 공제율 인상 등 – 일몰기한 3년 연장(2020.12.31.) 및 공제율 확대 (일반: 3% → 5%) 등 • (정부안) 2년 일몰연장(2019.12.31.) 및 공제율 축소 (대/중견/중소 3%/5%/7% → 1%/3%/7%)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24	259	601	619	874
	2014	2015	2016	2017e	2018e
	783	1,787	4,873	3,237	2,152

주요 개정연혁	• 공제율 조정: ('98) 5% → ('00) 일반 3%/중소 5% → ('01) 일반 3~5%/중소 5~10% → ('10) 일반 3%/중소 7% → ('14) 대 3%/중견 5%/중소 10%

[5]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63의2)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 colspan="2">1976.12.22.</td><td>일몰기한</td><td colspan="2">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6">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6">• 본사 및 공장 발생소득은 이전 후 소득 발생시점부터 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세액감면(지방광역시, 지방 중 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최저한세 적용배제
• 본사 및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 최저한세 적용대상</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6">•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및 제도변경 (공제액을 고용과 연계)</td></tr>
<tr><td colspan="2"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1,223</td><td>2,325</td><td>2,001</td><td>2,286</td><td>1,659</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1,405</td><td>1,436</td><td>3,984</td><td>8,690</td><td>9,159</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6">• 1976년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3) 및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동법 제4조의12)으로 제도도입
•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신설로 조문이관(6년간 100%, 5년간 50%)
• 2003년 감면적용기간 변경(5년간 100%, 2년간 50%) 및 적용요건 완화(5년 이상 → 3년 이상)
• 2010년 감면적용기간 변경(7년간 100%, 3년간 50%, 광역시 등은 각각 5년/2년)</td></tr>
</table>

[6]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72)

신설일자		1981.12.3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전문적 세법지식이 결여된 소규모 법인인 조합법인을 지원		
지원내용	현행	• 농협·수협·신협등 조합법인(조특법 §72①)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 등을 합한 금액에 대해 저율과세: 과표 20억원 이하 9%, 초과 12%		
	개정안	• (의원안) 단순 일몰연장, 일몰연장 및 세율인하 등 – 일몰기한 5년 연장 및 세율 인하(9% → 5%) 등 • (정부안) 대규모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확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172	2,627	3,418	3,250	2,275
	2014	2015	2016	2017e	2018e
	2,288	1,616	2,360	2,448	2,580

주요 개정연혁	• 특례세율 조정: ('81) 5% → ('90) 10% → ('98) 12% → ('08) 9% → ('14) 누진세율 적용 9%/12% • 과세표준 조정: ('12) 세무조정사항 추가 – (~'11) 당기순이익에 접대비·기부금 반영 → ('12~) 인건비·복리후생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차입금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 등 추가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

신설일자		1976.12.22.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 과밀억제권역 내 2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나 공장 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현행	• 이전 후 공장발생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7년간 100%, 3년간 50%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 이전시 5년간 100%, 2년간 50%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695	685	856	908	619
		2014	2015	2016	2017e	2018e
		641	467	775	773	818
주요 개정연혁		• 감면적용기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 – 2003년 개정: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2010년 개정: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성장자연권역 등에 대한 감면도 2010년 신설			

[8] 청년고용증대세제 (조특법 §29의5)

신설일자	2015.12.15.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청년 고용 증대		
지원내용 현행	•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1인당 대 300만원/중견 700만원/중소 1,000만원 세액공제 * 조특법상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로 재설계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558	809	1,307

주요 개정연혁	• 2015년 신설 후 1인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정 – 2015년: 대 200만원/ 중소 · 중견 500만원 → 2017년: 대 300만원/중견 700만원/ 중소 1,000만원

[9]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21의23)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2011. 12. 31.</td><td>일몰기한</td><td>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3">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한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익증진</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3">• 농업협동조합의 분할을 적격분할로 의제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완화 및 양도차익 과세이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 및 사용에 대해 과세특례
• 전산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3">• (정부안)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020.12.31.)</td></tr>
<tr><td colspan="2"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td><td></td><td>신설</td><td>1,419</td><td>1,610</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1,000</td><td>760</td><td>415</td><td>422</td><td>443</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3">•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완료에 따른 적용 기한 종료
• 2014년 농협중앙회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명칭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폐지</td></tr>
</table>

[1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04의27)

신설일자		2014.1.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현행	•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현금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9%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경우 종합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5%를 세액공제(공제한도: 2천만원)			
	개정안	• (정부안) 감면폐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	347	488	488

주요 개정연혁	• 2016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11]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5)

신설일자		2015.12.15.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정착 지원			
지원내용	현행	•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등록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 (정부안)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183	290	305
주요 개정연혁	• 해당사항 없음				

[1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조특법 §71)

신설일자	2006.12.30.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영농자녀의 농지 조기이전 촉진으로 농업 세대교체 지원		
지원대상	• 농지 등 소재지 거주 및 3년 이상 직접 영농종사한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인 영농자녀		
지원내용 현행	•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 감면한도: 5개년 통산 1억원 * 적용한도: 농지(40,000㎡), 초지(148,500㎡), 산림지(297,000㎡)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및 대상확대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35	265	312	285	218
	2014	2015	2016	2017[e]	2018[e]
	244	274	304	110	119

[13]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신설일자	1981.12.23.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사업자의 시설투자비 부담경감을 통한 안전설비 강화		
지원대상	산업재해예방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내진보강설비 등에 투자한 내국인		
지원내용 현행	• 안전설비 시설 투자금액의 3%세액공제 (중견 5%, 중소기업 7%)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일몰 2년 연장 및 공제율 축소 (대/중견/중소 3%/5%/7% → 1%/3%/7%)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6	94	47	46	149
	2014	2015	2016	2017[e]	2018[e]
	104	116	174	136	198

주요 개정연혁	• 1982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 중 산업재해예방시설을 특정설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 •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 2003년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부터 단독조항으로 시행 • 공제율 변천('98년 5% → '01년 3% → '08년 7% → '09년 8% → '10년 10% → '14년 대 3%/ 중견 5%/ 중소 7%)

[14] 근로소득 증대세제 (조특법 §29의4)

신설일자	2014.12.23.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상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은 내국인		
지원내용 현행	•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의 5%(중소·중견기업 10%) 세액공제 •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금액의 10% 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은 5%(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공제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일몰 3년 연장(2020.12.31.) 및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0% → 20%),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조정 (총급여 1.2억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	158	88	287

[1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조특법 §16①)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 colspan="2">1997.8.30.</td><td>일몰기한</td><td>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4">벤처투자시장의 저변 확대 및 엔젤투자 활성화</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4">• 중소기업창투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 30~100% 소득공제</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4">•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td></tr>
<tr><td colspan="2"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21</td><td>12</td><td>10</td><td>9</td><td>13</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22</td><td>66</td><td>134</td><td>192</td><td>205</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4">•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일몰 연장
• 2015년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 변경(5,000만원 이하 50% → 1,500만원 이하 100%)</td></tr>
</table>

[16]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조특법 §87의2)

신설일자	1976. 4. 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보전		
지원내용 현행	•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저축장려금에 대해 증여세 · 상속세를 비과세하나,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	*	108	120	87
2014	**2015**	**2016**	**2017e**	**2018e**
96	98	124	104	111

* 행정부가 2010년까지 조특법 등에 따른 다수의 저축지원 조세감면 실적을 통합하여 발표함에 따라, 개별 제도의 조세감면 실적을 알 수 없음

주요 개정연혁	• 2010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舊 조감법 부칙(1994.12.22.)에 규정하던 것을 조특법으로 이관 • 도입 후 지속적으로 일몰연장

[17]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107의3)

신설일자		2015. 12. 15.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			
지원내용	현행	•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제출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91	112	118
주요 개정연혁	• 해당사항 없음				

[1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69의2)

신설일자		2011.7.25.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국내 축산농가 지원			
지원대상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 및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시 양도하는 거주자 (한도: 1인당 1,650㎡)			
지원내용	현행	•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감면한도: 5개년 통산 3억원 또는 조특법 §133① 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적용항목 합산 연간 1억원			
	개정안	• (정부안) 일몰 3년 연장(2020년말까지) 및 면적 제한(1,650㎡) 폐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설	*	*
		2014	2015	2016	2017[e]	2018[e]
		34	56	68	75	80
		* 행정부는 2011~2013년 실적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과 통합집계				

[19]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3)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2008.12.26.</td><td>일몰기한</td><td>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장기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라 정책적 차원에서 혜택부여</td></tr>
<tr><td colspan="2">지원대상</td><td colspan="3">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토지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한 자</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3">• 양도소득세의 40% 감면(토지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감면)</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3">•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및 감면율 축소</td></tr>
<tr><td colspan="2"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35</td><td>67</td><td>77</td><td>61</td><td>41</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48</td><td>41</td><td>58</td><td>43</td><td>33</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3">• 2008년 도입 당시 2011년을 일몰기한으로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 일몰연장
• 2014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익사업용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취득(50% → 40%)
② 매수청구일부터 20년이전 취득(30% → 25%)</td></tr>
</table>

[20]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조특법 §117의 ①)

신설일자	1996.12.30.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창투사 등의 주식거래비용을 낮춰줌으로써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유도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지원내용 현행	다음의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① 중소기업창투사(조합)이 창업자 ·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양도시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시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시 ④ ①~③의 투자조합이 코넥스 상장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시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57	37	23	14	21
	2014	2015	2016e	2017e	2018e
	24	43	47	34	24

[21]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②)

신설일자	1994.12.22.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농업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지원대상	농·어민		
지원내용 현행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1	37	61	45	46
	2014	2015	2016	2017e	2018e
	61	53	42	46	49

[22]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특법 §109④)

신설일자		2008.9.26.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전기자동차 기술력 확보			
지원내용	현행	• 전기자동차 1대당 200만원 한도 개별소비세 감면			
	개정안	• (정부안) 2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설	0.91	1
	2014	2015	2016	2017e	2018e
	12	28	35	124	148

[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신설일자		1984.4.9.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기관투자자의 조합출자 참여 유도를 통한 창업자 및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내용	현행	• 출자로 인해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 출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2	18	27	24	16
		2014	2015	2016	2017e	2018e
		22	16	27	16	9
주요 개정연혁		•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				

[2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조특법 §30의2)

신설일자		2008.9.26.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내용	현행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700만원 세액공제(중견기업 500만원)			
	개정안	• (정부안) 1년 일몰연장(2018.12.31.) 및 중소기업 공제금액 확대(700만원 → 1천만원)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5	3 (일몰종료)			
	2014	2015	2016	2017e	2018e
	0.31 (재도입)	4	15	22	58
주요 개정연혁	•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				

[25]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9의2)

신설일자		2011.12.3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배출이 심한 경유버스, 청소차 시내버스를 매연이 없는 청정한 전기버스 차량으로 교체			
지원내용	현행	•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포함)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14	14	15

주요 개정연혁	• 해당사항 없음

[26]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126의7)

신설일자		2014.1.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금거래소 활성화를 통해 금거래 양성화 지원			
지원내용	현행	•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매입세액공제 허용,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개정안	• (정부안) 2년 일몰연장(2019.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	0.73	3.23	1.74	1.81
주요 개정연혁	• 2015년 일몰기한 2년 연장('15년 말 → '17년 말)				

[27]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 경감 (조특법 §118①3)

신설일자		1979.12.28.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국내 보급률 조기 달성 및 시장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국산화율 제고, 업계의 글로벌 원가 경쟁력 강화			
지원내용	현행	• 국내제작이 곤란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용 · 이용기자재에 대해 관세 50% 경감			
	개정안	• (정부안) 2년 일몰연장(2019.12.31.) 및 중견기업 적용대상 추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26	195	143	88	49
	2014	2015	2016	2017[8]	2018[8]
	12	2.27	3	1	5

[28] 국가 양도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85의10)

신설일자		2010.1.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경제적 약자인 산주를 보호하고 국가시책 수용 유도			
지원내용	현행	•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를 세액감면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	5	6	4
	2014	2015	2016	2017e	2018e
	3	1.5	3	1	1
주요 개정연혁	• 2010년 도입 당시 2012년을 일몰기한으로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 일몰연장 • 2015년 양도소득세 감면율 축소(15% → 10%)				

[2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85의8)

신설일자		2008.12.26.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에 산업시설 및 기업 활동의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에 소재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			
지원내용	현행	• 내국법인: 양도차익 2년 거치 2년 분할익금산입 • 거주자: 양도소득세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	0.3	1	1	2
		2014	2015	2016	2017[e]	2018[e]
		2	1	1.02	0.89	0.46
주요 개정연혁		• 2008년 도입 당시 2011년을 일몰기한으로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 일몰연장 • 2014년 일몰연장('14년 말 → '17년 말)			

[30]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신설일자	1976.12.22.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과밀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지원내용 현행	• 지원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 지원내용 :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간 법인세 분할익금 적용 ※ 최저한세 적용대상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1	1	1	1	0.53
	2014	2015	2016	2017e	2018e
	0.26	0.16	1	8	11

[3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 §60)

신설일자		1976.12.22.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대도시권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과밀해소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지원내용	현행	• 지원대상 : 대도시권*내 공장을 대도시권 밖('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지방광역시 등 •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간 분할익금 ※ 최저한세 적용대상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0	25	21	14	17
	2014	2015	2016	2017[e]	2018[e]
	3	1.58	1	4	6

[3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특법 §97의5)

신설일자		2014.12.23.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지원내용	현행	•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0.19	0.22	0.16	0.17
주요 개정연혁	• 2015년 동 조세특례의 대상에 기업형임대주택 추가				

[33] 창업자(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4)

신설일자		1993.12.3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벤처투자 확대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지원내용	현행	•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및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7	-	-	-	-
	2014	2015	2016	2017[e]	2018[e]
	-	-	0.15	30	31
주요 개정연혁	•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후 지속적으로 일몰 연장				

[3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조특법 §29의3)

신설일자		2014.12.23.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지원내용	현행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3년 연장(2020.12.31) 및 공제율 30%(중견기업 15%)로 인상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	2018[8]
		신설	-	0.06	0.14	0.15
주요 개정연혁		• 2016년 경력단절기간을 3~5년에서 3~10년으로 확대				

[35]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병역 이행 후 복직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2)

신설일자	2013.1.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 지원		
지원내용 현행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시킨 중소기업 • 복직자에게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중견기업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금액 확대 : 복직 후 2년간 10% → 2년간 30%(중견기업 15%)		

감면실적(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설
	2014	2015	2016	2017e	2018e
	–	0.01	0.02	–	–

[36]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46)

신설일자		1998.12.28.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Big deal)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지원내용	현행	•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때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개정안	• (정부안) 감면폐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	–	–	–	–
		2014	2015	2016	2017[e]	2018[e]
		–	–	–	–	–
주요 개정연혁		• 2013년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과세특례 일몰 종료 폐지 • 2015년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37]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과세특례 (조특법 §91의15)

신설일자		2014.1.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 및 코넥스 시장 육성			
지원내용	현행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 한도)			
	개정안	• (정부안) 감면폐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	–	–	–
주요 개정연혁		• 2014년 신설 이후 지속적 일몰연장 (2015년, 2016년, 2017년) • 2015년 인별 분리과세 투자금액 한도 축소 (5천만원 → 3천만원)			

[38]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조특법 §91의17)

신설일자		2015.12.15.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현행	•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개정안	• (정부안) 감면폐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	-
주요 개정연혁		• 해당사항 없음				

[39]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자 과세특례 (조특법 §97의6)

신설일자		2014.12.23.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지원내용	현행	•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				
	개정안	• (정부안) 감면폐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	–	–	–
주요 개정연혁		• 2016년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40]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99의4)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2003.12.30.</td><td>일몰기한</td><td>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3">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해소</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3">•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3">•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td></tr>
<tr><td colspan="2"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td><td>–</td><td>–</td><td>–</td><td>1</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3">• 2008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농어촌주택에서 확대하여, 고향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향주택 추가
• 2005년 일몰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연장</td></tr>
</table>

[41] 정비사업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조특법 §104의26)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 colspan="2">2014.1.1.</td><td>일몰기한</td><td colspan="2">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6">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6">• (시공자 등)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시 해당금액 손금산입
• (조합 등) 채무면제이익을 상증법상 증여 또는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지 않음</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6">•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td></tr>
<tr><td colspan="2"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신설</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6">•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42]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95①)

신설일자		1993.12.3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중장기적인 친환경산업의 성장잠재력 증진			
지원내용	현행	• 오염물질·폐기물의 배출방지,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74	78	118	80	39
	2014	2015	2016	2017e	2018e
	0.19	0.24	0.07	-	-
주요 개정연혁	• 해당사항 없음				

[43] 수협 중앙회 사업구조재편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25⑦⑧)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2015.12.31.</td><td>일몰기한</td><td colspan="3">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5">수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 지원</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5">• 수협은행이 조합·수협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 사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5">•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td></tr>
<tr><td colspan="2"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td><td></td><td>10</td><td>-</td><td>-</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5">• 해당사항 없음</td></tr>
</table>

[44] 개인택시용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106①9의3)

신설일자		2013.1.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개인택시 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구입비용 경감			
지원내용	현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운송 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설	-
	2014	2015	2016	2017[e]	2018[e]
	-	-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주요 개정연혁	• 해당사항 없음				

[45]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1)

신설일자		2008.12.26.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가계 양육부담 경감 및 보육지원 강화			
지원내용	현행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 제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3년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14	2015	2016	2017[e]	2018[e]
	추정곤란	-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주요 개정연혁	• 2011년 일몰 3년 연장(2011년 말 → 2014년 말) • 2014년 일몰 3년 연장(2014년 말 → 2017년 말)

[46]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법 §101)

신설일자	2004.12.31.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지원내용

현행

- 한시적으로 상증법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

〈최대주주 소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

최대주주 등 지분율	중소기업	일반기업
50% 초과	15%	30%
50% 이하	10%	20%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14	**2015**	**2016**	**2017e**	**2018e**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 감면대상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주요 개정연혁

- 2014년 일몰 3년 연장(2014년 말 → 2017년 말)

[47]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4의2,4의3)

신설일자		1976.12.22.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주민의 주거비 안정을 지원				
지원내용	현행	• 국민주택 초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 (정부안)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14	2015	2016	2017[8]	2018[8]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주요 개정연혁		• 2009년: 면세용역 추가(청소용역) 및 일몰연장 • 2012년: 용역별 감면율 100% 통일, 적용기한 연장 • 2015년: 대형 공동주택(전용면적 135㎡* 초과, 단, 비수도권 읍·면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및 적용기한 연장				

[48] 임산물 등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①12)

신설일자		2010.12.27.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초기 수요창출을 통한 농산촌 지역의 연료대체 유도				
지원내용	현행	• 임산물 중 목재펠릿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 (정부안) 면제범위 조정(목재펠릿 → 농민·임업인에게 공합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일몰기한 연장(2020.12.31.)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2014	2015	2016	2017e	2018e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주요 개정연혁		• 2013년 일몰 3년 연장(2012년 말 → 2015년 말) • 2015년 일몰 2년 연장(2015년 말 → 2017년 말)				

[49]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조특법 §136②)

<table>
<tr><td colspan="2">신설일자</td><td colspan="2">2007. 6. 1.</td><td>일몰기한</td><td>2017.12.31.</td></tr>
<tr><td colspan="2">지원목적</td><td colspan="4">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현행</td><td colspan="4">•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손금산입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에 수입금액별 차등요율 적용 금액 등을 가산하여 설정</td></tr>
<tr><td>개정안</td><td colspan="4">• (정부안) 개정안 소규모법인*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한도 축소 및 3년 일몰연장(2020.12.31.)
*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td></tr>
<tr><td rowspan="4">감면실적
(억원)</td><td>2009</td><td>2010</td><td>2011</td><td>2012</td><td>2013</td></tr>
<tr><td>-</td><td>-</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r>
<tr><td>2014</td><td>2015</td><td>2016</td><td>2017e</td><td>2018e</td></tr>
<tr><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d>추정곤란</td></tr>
<tr><td colspan="2">주요
개정연혁</td><td colspan="4">• 2007년 도입 후 일몰연장이 지속되며 조세지원 확대
• 2015년 적용한도를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추가 인정’에서 ‘20%’로 확대</td></tr>
</table>

[5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7의4)

신설일자	2015.12.15.	일몰기한	2017.12.31.
지원목적	원·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급 지급 유도		
지원내용 현행	• 지원대상 : 구매대금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중소기업 * 상생결제제도: 대기업의 신용을 통해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공제금액 : 상생결제금액의 0.1~0.2%를 세액공제(15일 이내 지급시 0.2%, 15~60일 0.1%)하며, 최저한세 적용대상 ※ 한도: Min[①공제금액, ②소득세 · 법인세×10%]		
지원내용 개정안	• (정부안) 3년 일몰연장(2020.12.31.) 및 중견기업 공제대상 추가		

감면실적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신설	-	2	2

주요 개정연혁	• 해당사항 없음

Part 04

지방세

지방세 세목

72 지방세 세목별 과세체계

세목	과세대상		세율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 일반세율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1.0~3.0% • 중과세율 4.4%, 8.0%, 8.4% 등
지방 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0.6~4.0%
	양도소득		0.6~4.0%, 1.0~7.0%
	법인소득		1.0~2.2%
	특별징수		법인·소득세액의 10.0%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 주택 0.1~0.4% • 건축물 0.25% • 토지 종합: 0.2~0.5%, 별도: 0.2~0.4%, 분리: 0.07~4%
	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법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1cc당 18~200원 (승합 자동차 등은 다름)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지방 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11%
담배 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종류별 다름)
등록 면허세	등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주: 세목은 보통세, 목적세 순, 징수액이 큰 순서임.
자료: 서울특별시, 「2017 알기쉬운 지방세」, 2017, p.19.

세목	과세대상		세율
등록 면허세	등록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5,000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0%), 설정(0.2%), 기타(10,000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0.4%), 자본증가(0.4%) • 비영리법인: 설립(0.2%), 출자증가(0.2%)
	면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8,000원 ~ 67,500원
주민세	균등분	개인 · 법인	개인(4,800원), 법인(5~50만원)
	재산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종업원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 (1억 3,500만원 초과)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방 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각각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 20%, 30%, 43.99%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 자원분	지하수	채수량 1㎥당 20~200원

73 취득세

■ 부동산 · 차량 등 과세물건 취득에 대한 과세로,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취득 관련 과세대상과 통합

■ 과세대상

- 부동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골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승마회원권 등
-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 차량 ·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취득

■ 세율: 일반세율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1.0~3.0%
중과세율 4.4%, 8.0%, 8.4% 등

■ 2016년 취득세 21.7조원, 지방세 대비 28.7%(잠정치)

- 부동산 경기 호황 등의 영향으로 2015~2016년 세수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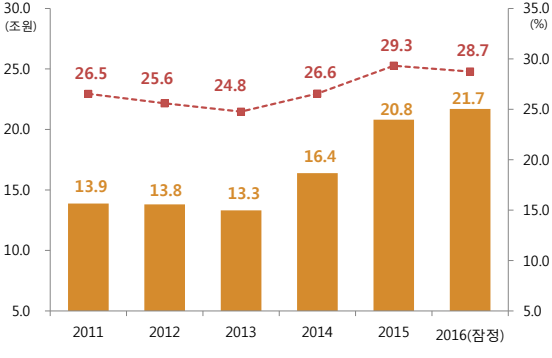

■ 연혁[7)]

'11년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13년	전·월세 시장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 인하 :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 → 보유 주택수 관계없이, 6억원/9억원 기준, 1%/2%/3%의 누진세율 적용

■ 주요 이슈[8)]

① 취득세 세율체계 단순화

- 2011년 등록세와 통합 이후 양 과세대상이 단순히 합산됨으로써 취득세 세율체계가 복잡화

  ※ 2011년 개편 이전 취득세는 과세대상에 관계없이 2% 표준세율 적용

② 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체계 개편

- 취득세 누진세율 체계는 거래 왜곡, 탈세 조장 등 문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 2017
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 2017

74 지방소득세

■ 소득크기에 따른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으로 구분

■ 세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을 준용, 소득세 세율의 10% 수준 부과

■ 2016년 지방소득세 13.1조원, 지방세 대비 18.5%(잠정치)

- 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의 독립세 방식 전환('14년, 법인분은 징수시차에 따라 '15년부터 반영)
- 개인 및 법인의 소득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 등에 따라 세수 증가

※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surtax) 방식과 달리, 독립세 방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세수 증가효과 발생(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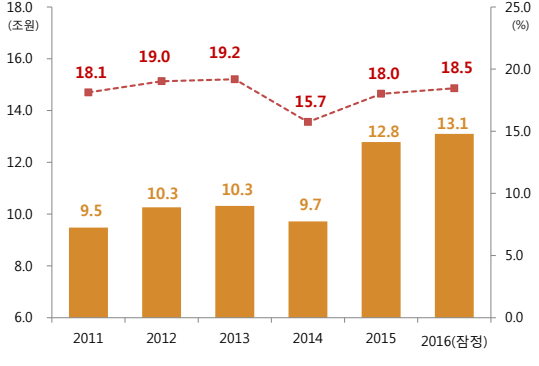

연혁

'11년	기존 주민세 소득세할·법인세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법인세분·종업원분으로 통합·신설
'14년	기존 부가세 방식(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 → 독립세* 방식 전환, 소득분은 소득세분과 법인세분으로,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규정

주요 이슈

① 누진세율 체계(현행) vs. 비례세율 체계

- 누진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 지방세의 응익과세적 성격 감안, 비례세율 적용
- 누진세율 적용시 지역간 세수불균형 심화

② 지방자치단체간 과세권

- 현행 광역자치단체(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세목이면서 기초자치단체(도의 시 · 군) 세목
- 기초자치단체 세목 통합 주장: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원확충 및 과세자주권 확보
- 광역자치단체 세목 통합 주장: 지방소득세의 경기에 따른 세수변동성과 효율적 과세행정을 감안

75 재산세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

■ 과세표준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50~9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40~80%

■ 세율

- 주택
  ① 별장 : 과세표준액의 4%
  ②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만원+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0.4%

- 건축물

과세표준	세 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골프장은 '09년 말까지 2%)
기타 건축물	0.25%

-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 제외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초과금액의 0.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등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초과금액의 0.4%

③ 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이외 토지 0.2%

- 선박: 고급 5%, 기타 선박 0.3%
- 항공기: 0.3%

2016년 재산세 9.9조원, 지방세 대비 13.9%(잠정치)

-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산세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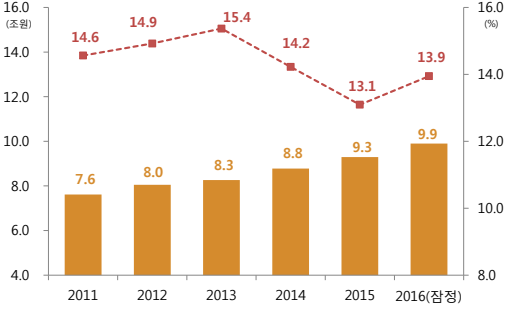

■ 연혁

'61년	지세, 가옥세, 광세, 선세 등을 통합하여 도입·시행
'90년	종합토지세 도입에 따라 재산세 과세분에서 토지 제외
'05년	종합토지세 폐지로 재산세 토지과세 * 단, 일정금액 초과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별도 부과

■ 주요 이슈

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체계 정비

- 현행 토지 용도 외 소유주체, 소재지역, 사업자 특성 등 토지 구분이 복잡하고 세율 차등화
- 과세대상 구분 기준 명확화, 과세대상간 세율격차 축소를 통한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 필요

※ 현행 토지보유세 구조

구분		지방세			국세	
		토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방 교육세	종합 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
과표		공시지가 70%	재산세 과표	재산 세액	(공시지가 – 공제액) 80%	종부세액
세율	종합	0.2~0.5%	0.14%	20%	0.75~2%	20%
	별도	0.2~0.4%	0.14%	20%	0.5~0.7%	20%
	분리	0.07%, 0.2%,4%	0.14%	20%	–	–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세원 확대

- 세수 확보와 과세대상간 형평성 제고 목적
-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60%를 적용, 향후 80%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

③ 세부담 상한제 축소

- 현행 세부담 상한율: 주택공시가격 3억원/6억원 기준, 105%/110%/130% 적용
- 과세형평성 제고, 과세체계 왜곡 해소 등을 위해 단계적 축소·폐지 필요

④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서 전액 지방에 교부됨
- 재산세와의 조화를 통한 부동산 보유세제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 등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논의

76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 등 부담금적 성격을 가짐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상 등록 ·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세율

- 소유분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용도별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 승용·승합·화물·3륜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하여 세율 차등화

- 승용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000cc이하	200원
2,500cc이하	19원	-	-
2,500cc초과	24원	-	-

- 승합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행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1,000㎏ 이하	6,600원	28,500원
2,000㎏ 이하	9,600원	34,500원
3,000㎏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 이하	45,000원	157,500원

- 특수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 3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2016년 자동차세 7.5조원, 지방세 대비 10.6%(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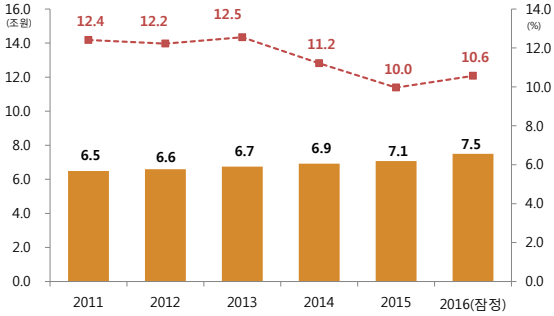

연혁

'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체결에 따른 지방세 감소 보전을 위해 주행세 도입
'11년	지방세 간소화 조치에 따라 기존의 주행세를 자동차세의 주행분으로 전환

주요 이슈

① 소유분 자동차세 부과기준

-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의 전환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과세 vs. 사회적 비용 감안(유류 소비, 환경 오염, 도로 마모·손상, 교통혼잡 등)
- 국제 부과기준: 배기량 기준(가장 일반적), CO_2 배출량 기준(EU국), 엔진출력(일부 국가) 등

② 주행분 자동차세 정상화

- 현행 주행분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 부분(70% 가량)을 지자체의 일반재원으로 전환할 필요

77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거래에 부과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액에서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과세표준의 11%
- 2016년 지방소비세 6.4조원, 지방세 대비 9.0%(잠정치)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14년, 5%→11%) 등에 따라 세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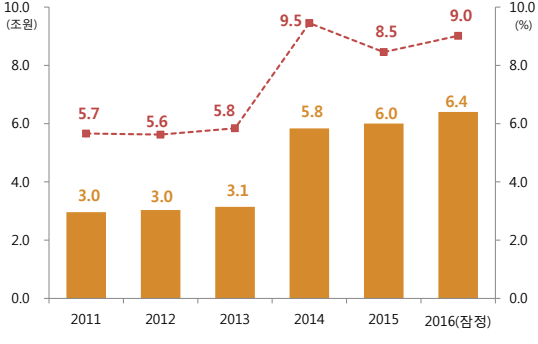

■ 연혁

'10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정비율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도입
'14년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6%를 추가로 지방 이양(총 11%) *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규정을 지특법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 1가구1주택자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세법 제11조)

▶ 기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의 5%분):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금액에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소비지수에 따라 안분

▶ 추가분(부가가치세액의 6%): 취득세 결손액에 따라 안분

※ 수도권 지역으로 안분된 지방소비세액의 35%는 다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지방자치단체로 재분배

■ 주요 이슈

①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조정

- 지방정부가 사회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력 확보 필요
- 2014년 추가 이양된 부가가치세액의 6%p분은 세율인상이 아니라 취득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것임

78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 납세의무자

- 취득세(차량 취득세 제외)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 등록면허세 제외)
- 레저세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
- 자동차세(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 포함)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세율

- 취득세 (표준세율 0.2%) 적용한 금액의 20%
- 등록세액의 20%, 레저세액의 40%, 재산세액의 20%
- 주민세 균등분세액의 인구 50만 기준, 10%/25%
- 자동차세액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43.99%

■ 2016년 지방교육세 6.3조원, 지방세 대비 8.9%(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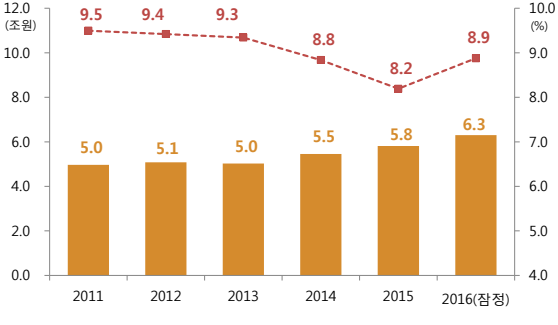

■ 연혁

'01년	일부 지방세*의 세액에 부가하는 목적세로 도입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 주요 이슈

① 담배소비세수의 지방교육재원 문제

- 담배소비세수 조세귀착의 역진성 문제와 흡연자와 교육대상 불일치에 따른 응익원칙 위배

② 자동차세수 활용의 응익원칙 위배

- 차량소유자와 교육서비스 대상자간의 불일치

③ 부동산 취득세수의 지방교육재원 문제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취득이나 등록 시점에 한 차례 부과·징수되어, 지역내 교육서비스 제공기간과 무관
- 전월세 세입자는 지역의 교육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에 의해 직접적으로 과세될 수 없는 형평성 문제

79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 소비행위 과세

■ 과세표준: 개수비,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세율

- 1종 궐련: 20개피당 1,007원
- 2종 파이프 담배: 1그램당 36원
- 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 4종 각련: 1그램당 36원
- 5종 전자담배: 용액 ml당 628원
  연초고형물 1g당 88원
- 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 씹는 담배: 1그램당 364원
- 냄새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 2016년 담배소비세 3.7조원, 지방세 대비 5.2%(잠정치)

- 담배값 인상('15년), 담배소비량 감소효과 부진 등에 따라 세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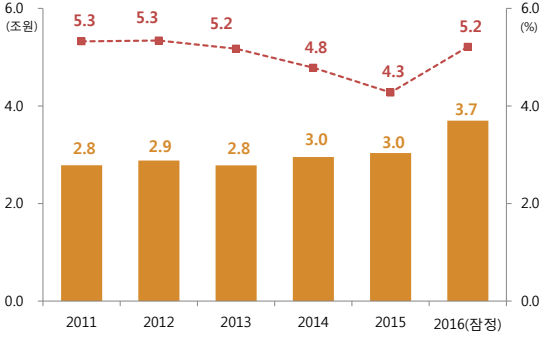

■ 연혁

'88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 관련 세제를 담배소비세로 통합하여 지방으로 이양
'15년	담배소비세율 인상 (예) 제1종 궐련 641원 → 1,007원

※ 담배가격 변화('14년 개정 전후, 예: 제1종 궐련)

출고가 및 유통마진	중앙정부			지방정부	
	부가 가치세등	개별 소비세	건강증진 부담금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950원 ↓ 1,182원	234원 ↓ 433원	없음 ↓ 594원	354원 ↓ 841원	641원 ↓ 1,007원	321원 ↓ 443원
	(합계) 588원 ↓ 1,868원			(합계) 962원 ↓ 1,450원	

■ 주요 이슈

① 담배가격 인상

- 2014년 담배세제 개정 이후 담배 관련 세제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이전 62.1%→43.7%)
- 중앙정부의 경우 건강증진부담금 외 국세인 개별소비세 추가 과세

80 등록면허세

■ 2011년 등록세 중 저당권· 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 인·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합

■ 세율(등록분)

- 소유권보존등기 8/1,000, 물권·전세권 2/1,000 등
- 선박등기: 0.2/1,000, 15,000원, 자동차등록: 0.2%/2%/3%/5%, 15,000원, 건설기계등록: 0.2%/1%, 10,000원 등

■ 세율(면허분)

구분	인구 50만 이상 시 등	기타 시	구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2016년 등록면허세 1.7조원, 지방세 대비 2.3%(잠정치)

- 면허분 세율인상('14년), 부동산경기 호황 등으로 세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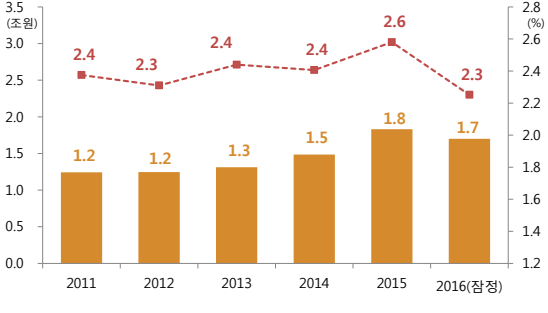

■ 연혁

'54년	면허세를 지방세로 이관
'7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창설하며, 지방세인 유흥음식세를 국세로 이관하고, 등록세를 지방세로 이양
'11년	지방세 통·폐합시 기존 등록세 중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와 기존 면허세를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흡수
'14년	등록면허세율 인상 : (등록분) 1,500원~90,000원 → 3,000원~135,000원 (면허분) 3,000원~45,000원 → 4,500원~67,500원

■ 주요 이슈

① 세율 현실화

- 2014년 등록면허세율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일각에서는 미흡하다는 견해도 제기

②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

- 현행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관련 규정의 제·개정의 반영이 어려움

③ 면허 종류별 형평성 문제

- 등록면허세의 면허가 업종별(제1종~제5종)로 구분되는데, 면허간의 비교가 곤란하고 장기간 기준도 미정비됨

81 주민세

■ 소득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주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 정비의 필요경비 충당을 위해 사업소에 과세되는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 세율

- 균등분
  ① 개인: 1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②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 5만원
  ③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2016년 주민세 1.8조원, 지방세 대비 2.5%(잠정치)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주민세 이관('14년), 자치단체별 조례 개정(개인 균등분 1만원선 인상) 등으로 세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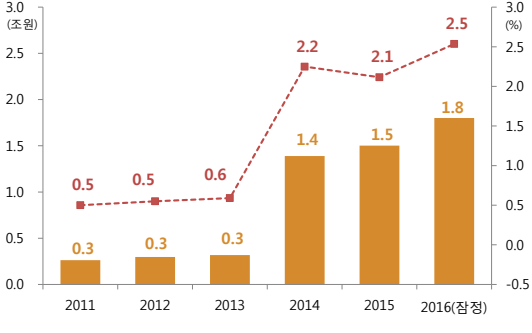

■ 연혁

'49년	도에는 호별세로, 시읍면에는 호별부가세로 존치 ※ 주민세는 조선 초기 호별로 부과되던 군포세에서 유례된 것으로, 1961년 폐지된 호별세가 기원임
'61년	세제개혁을 통해 호별세와 호별부가세 폐지
'73년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시·도에 주민세, 시·군에 주민세 부가세를 신설, 본세와 부가세 비율을 2:8로 배분
'76년	주민세를 시·군세로 설치, 이후 지방자치가 시행되며 특·광역시에는 시세로, 도에는 시·군세로 설정 ※ 균등할(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
'10년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소득세로,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로 이관 ※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분
'14년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이관 ※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
'15년	주민세 개인균등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비율 상향조정 : 기존 150% → 200%

■ 주요 이슈

① 주민세 세율 인상

- 2014년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단계적 세율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됨
- 주민세는 저소득층 비과세에도 불구하고 서민증세라는 시각에 따라 세율인상이 쉽지 않은 측면
- 2015년 주민세 탄력세율 상향조정 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대부분의 시·군에서 개인균등분을 1만원까지 인상하는 조례 개정

82 지역자원시설세

■ 지하 · 관광 등 지역자원 보호 및 개발, 소방 등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등 필요경비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 2011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통합

■ 과세표준과 세율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 율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지하수	세제곱미터당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컨테이너 1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세 율	비 고
600만원 이하	4/10,000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 2016년 지역자원시설세 1.4조원, 지방세 대비 2.0%(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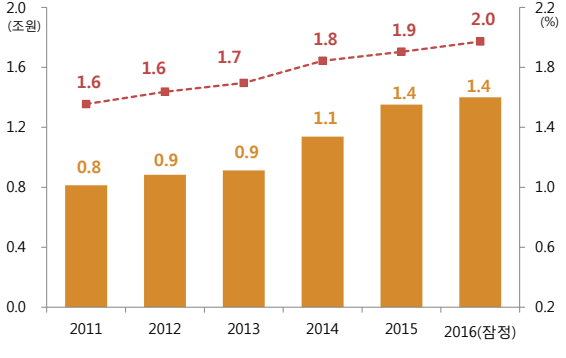

■ 연혁

'11년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신설 → 각각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 및 '특정부동산분'에 해당

■ 주요 이슈

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 개발로 인해 발생할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과세로서 신규 세원을 발굴할 필요
- 풍력발전, 폐기물, 위험시설물(LNG 인수기지 등), 해양심층수 등이 최근 논의 대상
- 단,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다른 지방세 대비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크게 부여되기는 하나, 조례 개정을 통한 과세대상 확대에 한계가 있음

83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 영위 사업자에게 과세

■ 과세대상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 한국마시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경기시행사(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세율: 발매액의 10%

■ 2016년 레저세 1.1조원, 지방세 대비 1.5%(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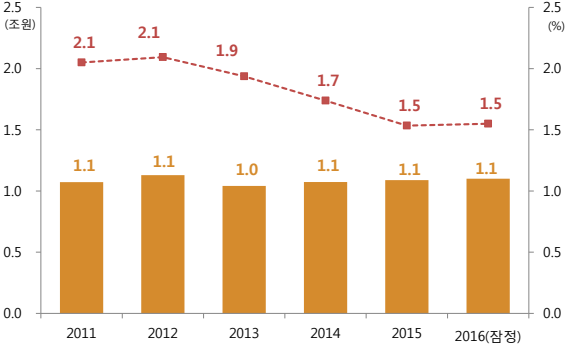

■ 주요 이슈

① 스포츠·레저산업, 관광산업 등 향후 지방세원 확대 가능

-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이 일부 사행행위에 한정, 자치단체간 세수분균형을 초래
- 장기적으로 입장 관련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레저세로 포함할 필요

② 사행산업 중 중 레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 3개 분야(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한 과세 확대

-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 및 동 업종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대한 외부불경제효과 등 감안
- 다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시 관련 기금의 감소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84 시도별·세목별 지방세 징수액

구분	계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 소비세	지방 소비세
계	75.53	21.70	1.71	1.06	3.74	6.40
서울	18.02	4.89	0.44	0.14	0.66	1.09
부산	4.62	1.29	0.10	0.11	0.23	0.51
대구	2.98	0.86	0.07	0.01	0.17	0.35
인천	4.03	1.34	0.09	0.02	0.21	0.28
광주	1.68	0.41	0.04	0.02	0.10	0.20
대전	1.68	0.38	0.04	0.02	0.10	0.21
울산	1.95	0.49	0.04	0.00	0.09	0.17
세종	0.50	0.23	0.01	0.00	0.02	0.05
경기	19.24	6.08	0.43	0.55	0.89	1.20
강원	1.86	0.54	0.04	0.00	0.14	0.23
충북	2.02	0.53	0.04	0.00	0.13	0.23
충남	3.12	0.87	0.07	0.02	0.18	0.31
전북	1.90	0.47	0.04	0.00	0.13	0.27
전남	2.24	0.56	0.04	0.00	0.14	0.25
경북	3.57	0.90	0.07	0.00	0.22	0.39
경남	4.74	1.34	0.11	0.10	0.27	0.54
제주	1.38	0.52	0.04	0.07	0.06	0.11

자료: 행정안전부(2017.4.)

(단위: 조원)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과년도 수입
1.76	13.09	9.93	7.55	1.45	6.27	0.87
0.47	4.19	3.13	1.09	0.26	1.40	0.26
0.09	0.69	0.54	0.50	0.12	0.39	0.05
0.05	0.40	0.36	0.39	0.05	0.24	0.03
0.08	0.50	0.57	0.47	0.09	0.33	0.05
0.04	0.26	0.16	0.24	0.03	0.14	0.04
0.05	0.29	0.20	0.21	0.03	0.14	0.02
0.08	0.47	0.21	0.21	0.04	0.14	0.01
0.01	0.06	0.05	0.03	0.01	0.04	−0.01
0.39	3.02	2.66	1.75	0.31	1.75	0.21
0.03	0.22	0.20	0.22	0.04	0.16	0.04
0.05	0.36	0.20	0.27	0.04	0.16	0.01
0.09	0.57	0.33	0.34	0.08	0.25	0.01
0.04	0.25	0.18	0.30	0.03	0.16	0.03
0.05	0.36	0.20	0.37	0.09	0.16	0.02
0.10	0.62	0.34	0.46	0.13	0.27	0.06
0.12	0.66	0.49	0.58	0.09	0.41	0.04
0.01	0.17	0.11	0.12	0.01	0.13	0.01

85 주요국의 특징적인 지방세 세목

미국	• 관광 · 숙박세 • 렌트카세 • 보험(영업)세 *뉴욕주 • 자동차등록 부가세 *뉴욕주 • 고속도로 사용세 *뉴욕주 • 오염세 *미네소타주
독일	• 견세 • 유흥장세 • 사냥 및 낚시세 • 음료수세 • 야영장세 *장기캠핑자 • 말의 보유 과세 • 숙박세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스	• 건축물 없는 토지의 토지세에 부가되는 부가세 • 기업 토지 부담금 부가세 • 청소세 *도로 연변의 건물 소유자 • 공가세 *거주기간 30일 이내로 2년 이상 빈 집 • 여행세 *관광객에 부과, 파리는 10%의 데파르트망세 부과
일본	• 자동차 중량세 • 항공기 연료세 • 전원개발촉진세 • 석유석탄세 • 숙박세 • 낚시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의 이해와 쟁점」

Part 04

지방세

지방세 조세감면

86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현황

■ 2015년 지방세 비과세 · 감면 13.0조원,감면율 15.5%

(단위: 억원, %)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 조례	조세 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130,123 (100.0)	68,256	55,605	1,452	4,528	282
취득세	53,054 (40.8)	12,536	37,651	1,045	1,553	270
재산세	48,417 (37.2)	36,617	11,405	165	231	0
담배소비세	16,642 (12.8)	16,642	-	-	-	-
자동차세	5,260 (4.0)	685	1,738	102	2,734	0
등록면허세	3,524 (2.7)	78	3,429	15	2	-
주민세	1,862 (1.4)	1,004	845	1	-	12
지역자원시설세	1,234 (0.9)	696	537	0.4	0.4	-
레저세	121 (0.1)	-	-	121	-	-
지방교육세	2 (0.0)	-	-	1	1	-
지방소득세	7 (0.0)	-	0	0	6	0
도시계획세	-	-	-	-	-	-

주: 1) 지방세 조세감면은 2016년 잠정치가 발표되지 않아, 2015년 실적치 기준으로 자료 정리
2) ( )은 전체 지방세 감면액 중 해당 세목의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1년 24.9% 이후 지방세 감면율 하락 추세

- 지방세감면율과 국세감면율의 격차가 작아지고 있으나, 2015년 기준 국세감면율 14.1% 대비 1.4%p 높은 수준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징수액	52.3	53.9	53.8	61.7	71.0
감면액	17.3	15.4	16.1	13.0	13.0
감면율	24.9	22.2	23.0	17.4	15.5

주: 감면율(%) = 비과세 · 감면액/(징수액+비과세 · 감면액)×100
자료: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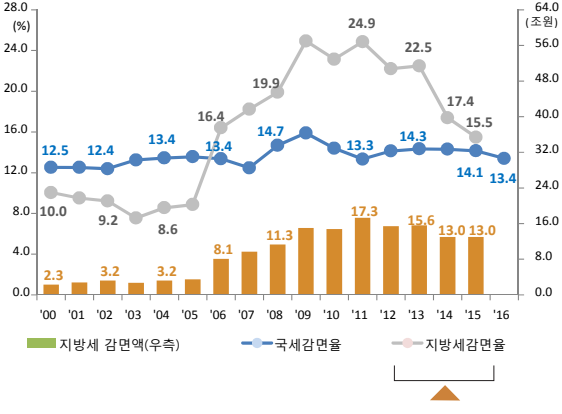

(지방세 증가) 부동산경기호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 감면 축소) 주택분 취득세 한시감면 폐지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행정자치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87 주요 지방세 비과세 · 감면 항목

■ 최근 지방세 감면실적은 2015년 기준값임

(단위: 억원)

항 목	감면액
1. 기업 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6,586
2. 매매용 수출용 중고차 등에 대한 감면	6,314
3.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5,488
4. 학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4,551
5.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4,416
6.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3,081
7.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2,465
8.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2,208
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1,844
10.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297
합 계	38,250 (29.2%)

주: (　)는 전체 지방세 감면액 대비 비중값임
자료:행정안전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88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 감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173,319 (100.0)	154,286 (100.0)	160,760 (100.0)	130,029 (100.0)	130,123 (100.0)
취득세	106,371 (61.4)	84,518 (54.8)	93,003 (57.9)	56,942 (43.8)	53,054 (40.8)
재산세	42,746 (24.7)	45,313 (29.4)	47,080 (29.3)	48,198 (37.1)	48,417 (37.2)
담배소비세	13,380 (7.7)	13,704 (8.9)	9,894 (6.2)	12,231 (9.4)	16,642 (12.8)
자동차세	6,534 (3.8)	6,499 (4.2)	6,624 (4.1)	6,779 (5.2)	5,260 (4.0)
등록면허세	1,106 (0.6)	1,141 (0.7)	843 (0.5)	2,487 (1.9)	3,524 (2.7)
주민세	451 (0.3)	408 (0.3)	438 (0.3)	1.993 (1.5)	1,862 (1.4)
지역자원 시설세	992 (0.6)	1,074 (0.7)	1,107 (0.7)	1,218 (0.9)	1,234 (0.9)
레저세	55 (0.0)	58 (0.0)	123 (0.1)	109 (0.1)	121 (0.1)
지방교육세	3 (0.0)	–	–	7 (0.0)	2 (0.0)
지방소득세	1,607 (0.9)	1,569 (1.0)	1,648 (1.0)	66 (0.1)	7 (0.0)
도시계획세	74 (0.0)	2 (0.0)	–	–	–

주: ( )는 비중값임

자료: 행정안전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89 지방세 감면 관리 규정[9)]

■ 「지방재정법」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 지방세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7: ('17년까지) 15.0% 목표
  → ('18년) '17년 감면율 + 0.5%
  → ('19년) '17~'18년 평균감면율 + 0.5%
  → ('20년 이후) 직전 3년간 평균 감면율 + 0.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별 조문 등에서 100% 감면율을 규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85%의 감면율을 적용 (최소납부세제, '15년 도입)
  ※ 단, 취득세 200만원 이하, 재산세 50만원 이하 등 예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지방세 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매년 2월 말일)
-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평가서 제출(매년 4월 20일)
- 연간감면액 1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방세 특례 도입에 대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등

■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행정서비스 공급재원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등은 감면배제 세목으로 설정

---

9) 관련 법령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과 지방세제 가이드"(2017) 참조

이 책자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연락처: 재산소비세분석과 02.788.4834 wealthc@nabo.go.kr

2017 조세수첩

발 간 일	2017년 11월
발 행 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대한민국국회 (Tel 02-2070-3125)
인 쇄 처	대한인쇄씨앤씨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소비세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4834)

ISBN 978-89-6073-483-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대한민국 국회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4-001583-10